

제43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1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법무부 소관
 - 법제처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법무부 소관
- 업무보고
 - 법무부
 - 법제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증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 법무부 소관
 - 법제처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2
 - 법무부 소관
- 업무보고 13
 - 법무부
 - 법제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3인 서면동의) 40
- 증인 출석 요구의 건 41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44
 - 법무부 소관
 - 법제처 소관

-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44
 - 가. 법무부 소관
 - 4. 업무보고 44
 - 가. 법무부
 - 나. 법제처
 -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 교섭단체 간사님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먼저 결산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다가 추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고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법무부 소관

(10시32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조원철 법제처장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공수처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관장님들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결산 개요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트북에 기재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제안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우선 말씀 듣고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법무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차관 보고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곽규택 위원 지금 해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서영교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곽규택 위원 차관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박형수 위원 그건 아니지요.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적을 하고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제가 우선 보고하시자고 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말씀 시간 드릴게요.

보고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회의를 회한하게 운영을 하시네.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 인사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이.

○위원장 서영교 우선은 진행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곽규택 위원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지금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형수 위원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김민전 위원 아니, 왜 마음대로 얘기해!

○곽규택 위원 잠깐 있어 봐요, 차관님.

○박형수 위원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박지원 위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이 하라고 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님,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순서가 안 맞잖아요.

○박형수 위원 안 된다고요. 순서가 안 맞지요, 그거는.

○위원장 서영교 이것만 듣고 나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우선 하고 나신 다음에 하자고요.

○곽규택 위원 법사위에 법무부장관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 내용을 그다음에 이야기하시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진행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법사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철 검찰국장입니다.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승재현 인권국장입니다.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입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입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인사)

서정민 법무실장은 차관회의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해외 도피 범죄자를 다수 국내로 송환하였으며 마약류·이상동기 범죄예방체계를 보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세 차례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67년 만에 민법 계약 분야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투자 분쟁에서의 연이은 승소와 우수인재 유치, 지역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비자체계 개편으로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구조금 하한액 상향으로 범죄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팀 구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압류 보호 생계비 현실화 등 누구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 유인물을 바탕으로 결산에 관한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 예산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674억 원으로 이 중 97%인 1조 616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9102억 원이며 그중 99%인 4조 86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액은 1449억 원이며 결산액은 149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 1조 5437억 원의 96%인 1조 4818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67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4조 7464억 원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집행 내역은 5쪽에서 8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액 1237억 원의 109%인 134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37억 원으로 그중 97%인 1204억 원을 지출하고 33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5쪽 이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시고 대리출석으로 법무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은 대리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당 간사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맞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고 출석을 몸이 아프다는…… 제가 직접 통화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출석을 제가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박형수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쪽에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전화를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출석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박형수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으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제대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의사진행입니다. 왜 법무부장관이 출석하지 않게 됐고 그거를 허락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업무보고에 인사말을 왜 차관이 하게 됐는지를 설명부터 해야지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거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왜 법무부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인사말을 하느냐

이걸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차관이 먼저 인사말 다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 좀, 의사진행 좀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법률에 대해 가지고 잘 아신다고 맨날 그러시던데 법률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의사진행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처음 시작을 얘기를 했지요, 위원장님한테. 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잖아요. 꼭 그거를 위원장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먼저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하게 하고 하자’ 이래서 자꾸 파행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얘기는 서로 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산보고 언제 적 결산입니까? 작년에 법무부장관이 재임하면서 했던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되고 인사말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70여 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 주무부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에요. 장관이 당연히 그 이후에 국민의 여론은 어떤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당과 야당이 따져 물을 때 그걸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관의 책무인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요? 몸이 계속 아프시다면서요. 사임했다고요? 사직서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그게 법무부장관의 태도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위원장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예. 우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이 그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대개 비난이라든가 혹은 모욕적인 말이 많이 포함되어서, 어떻게 보면 법사위라는 상임위 파행 혹은 분란의 단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의사진행발언의 허부라든가 아니면 횡수도 많이 제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 비난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그 정황을,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불필요한 의사진행의 횡수를 줄인다고 혹은 내용을 톤 다운시키는 적절한 의사진행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의 취지가 정말 무엇인지 또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도 계속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출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계속 전화 통화드리고 출석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 혹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불출

석에 대해서 허용,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도 유감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다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무부에서 양당 간사님들께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못 오시는 사유를 잘 설명하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에서 최대한 장관님의 사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장관님께서도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께도 다 보고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정식으로 오늘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 들으셨고 다 들었으면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 때…… 저도 직접 전화했습니다. 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형수 위원 두통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서영교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그렇다면 오늘은 결산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형수 위원 나도 위원장 때문에 두통이 아파 가지고 못 나오겠어요, 지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나오지 마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아파서 못 나오시겠으면.

○박형수 위원 두통 때문에 못 나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짜?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박형수 간사께서도 충분히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쪽에서 김승원 간사가 동의해 줬고 위원장도 동의해 줬다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그건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불허했어요.

○위원장 서영교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위원장 진행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진행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왜 하면 안 됩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곽규택 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게? 그게 지금 불출석 사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인신공격형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무슨 인신공격형이에요?

○곽규택 위원 사직서를 썼다고 해 가지고 지금 물러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사직서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어요. 하고 체크했어요. 그렇지만 국회법 안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니 대리출석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박형수 간사하고 국민의힘에게도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박형수 간사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듣고 안 된다고 불허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거기는 불허했고 이쪽에서는 허가했고 위원장이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부적절하다고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됩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제가 이진수 법무부차관에게 간부 소개와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라고 한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전에 지적을 하고 해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거는.

○위원장 서영교 저는 충분히 얘기드렸고 박형수 간사한테도 충분히 얘기하고 여러 번 아파 사정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그나마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에 나오는 증인들한테도 그렇게 좀 편의를 봐 드리세요, 앞으로 나오는 증인들한테도. 앞으로 두통 있다고 못 나온다고 증인들 얘기하면 그거 다 봐 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거는 김태규 위원이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내가 판단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도 법무부차관께서 가서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법무부장관께서 여타의 사정이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잘 청취하시라고 그리고 보고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똑같이 처리하세요, 앞으로 나오는 증인들. 법무부장관하고 똑같이.

○김승원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김태규 위원 그냥 저 혼자 해 봤습니다, 하도 한심하고 답답해서.

○위원장 서영교 한심이 누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김태규 위원 이 상황이요.

○위원장 서영교 말씀을 조심하세요. 말씀을 조심해서 골라서 하세요.

○김태규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조원철 법제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법제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찬 차장입니다.

안상현 기획조정관입니다.

양미향 법제정책국장입니다.

윤재웅 법령정보국장입니다.

채향석 행정법제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설명자료 1쪽과 2쪽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4쪽 이하에서 보시듯 2025년 예산은 457억 3300만 원이고 세출은 448억 2600만 원으

로 불용액은 약 2%인 9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과오지급 환수금 등 22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의 이월, 추정, 예비비는 없고 인건비 부족에 따라 보수로 전용한 4억 7200만 원 등 총 전용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 결산과 관련된 재정 상태, 재정 운영 및 변동사유 등은 9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주 간단히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과 22대 국회 후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수사하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대신해 주시는 고견과 질책을 겸허히 새겨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보고에 앞서서 공수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차장입니다.

이형석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상현 수사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수처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기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공수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며 세입결산액은 1억 1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27억 48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53억 9100만 원 대비 89.6%를 집행했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억 1200만 원이며 명퇴수당 반납분과 직원채용 응시 수수료 등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3억 9100만 원으로 227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96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이용은 없으며 전용액은 3500만 원입니다.

4쪽 이후부터 재무제표 요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3개 기관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 송부한 기관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총괄본을 배부해 드립니다. 총괄본을 기준으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본 3페이지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 소관은 총 46개 사업에서 5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총괄 중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하여 검찰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 집행한다’는 추경예산 부대의견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전액 미집행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추경으로 복원된 예산 중 일부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그 편성 규모를 필수불가결한 범위로 한정해 나가는 한편 집행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총괄 중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업무 위탁 시 집행하는 예산과목이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법무부 내에서도 실·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법무부는 기획예산처 지침에 맞게 예산과목을 통일하여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구조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2025년도 자체수입이 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재원 부족으로 일부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기관들이 자체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의 2025년 예산 3억 원 중 2억 6800만 원이 미집행되어 이·전용 감액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체류외국인 가사사용인 직무교육 목표 인원을 4000명으로 설정하였고 실제 참여 인원이 9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 부진에 따라 202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검토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실적 부진으로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및 결과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국총괄 관련하여 검찰국은 수사·정보 및 공소유지 활동 등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국과 검찰청의 예산집행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국은 해당 자료를 성실히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서 이러한 상황을 예산안 심사에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은 총 903개소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조사건수 대비 영상녹화조사비율이 3.7%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최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의 영상녹화장비 활용실적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급 검찰청과 지청에 설치된 영상녹화장비의 상당수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년원생수용 사업은 소년원학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이 부족하여 교과교육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법무부는 소년원학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교사 자격을 갖춘 일반직 교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원학교에서 근무하는 자격 교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시행령에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 호봉 획정 등 보수와 직결되는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법무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인 조은석 특별검사 사업과 이명현 특별검사 사업은 수사기간 연장에 따

른 예비비 추가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비비의 전용이 발생하였고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 추가로 받은 예비비를 대부분 불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비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의 전용이나 과다한 불용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예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이나 예비비 잔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인지 등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가 적기에 반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결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 13억 1000만 원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6년 올해 8월 기준 반납액이 없고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액을 4분기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함에 따라 21년부터 24년까지의 정산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지자체로부터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괄본 10페이지, 법제처 소관입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총 10개 사업 15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인건비 사업은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의 전용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처는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4억 71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그중 2억 6700만 원의 전용 재원은 법령정보제공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들의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무형자산 집행잔액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예산집행 지침과 총액인건비 세부 운영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제처는 향후 인건비가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총액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심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법제처가 국회에 보고한 법률안 제출계획 중 25년 기준 63.9%의 정부안이 추가·철회되었고 연도 내 미제출된 정부안도 전체의 19.8%인 25건으로 나타나는 등 법률안 심사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미제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전년도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법률안 제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총괄본 13페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총 5개 사업 9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게 업무상 통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수사업무 통신요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실비정산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된 일반수용비 사용 용도에도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통신요금과 관계없이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사실상 수당성 경비

를 지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최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함께 예산의 세목조정 및 전용 등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 소요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법사위 소관 기관의 결산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되 다음 주에 바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결산 서면질 의서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입니다.

4. 업무보고

가. 법무부

나. 법제처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시05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가 소관기관의 업무와 주요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의를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는 법사위원님들께 각 기관의 주요현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법무부, 법제처, 공수처 순으로 각 기관장들로부터 현안 위주의 간략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3개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조직 현황과 주요 업무 처리 현황 통계는 보고서 3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재심 청구 등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돕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설치 기반도 마련하여 연말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

설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전세사기 등 서민대상 범죄 엄단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범정형을 상향하였고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범죄보호망도 강화하였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자 필요적 몰수·추징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빈틈없는 형집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다수 해외도피사범의 송환 실적도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주주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지원하였고 약 67년간 개정되지 않은 민법의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시장질서와 민생을 해치는 생필품 담합 범죄와 시세조종 범죄도 엄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정부의 로펌으로서 주요 국제투자분쟁에서 연속 승소하여 대규모 국고 유출을 방지하였고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인재 국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운영하고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특례도 신설하였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와 열람·등사 대상 기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주말·야간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365스마일센터 운영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과 직제를 정비하는 등 공소청의 개청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입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소년범 재범률 감소 대책입니다.

소년범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성인과 분리하여 소년 처우만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도입하겠습니다.

48~49쪽,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와 교정청 신설입니다.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약 127%로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정시설 신설·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정정책 수립을 위해 교정청 신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밀화 해소를 통해 실효적 교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입법 추진 상황은 53쪽 이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부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1~7쪽의 내용으로 같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정부입법 총괄 및 관리입니다.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정부출범 이후 국정과제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정입법 과제 335건의 제정 및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12쪽, 법령심사 및 법제지원입니다.

7월 말까지 총 1087건의 법령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74건의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13쪽, 법령해석 및 법적 자문입니다.

7월 말까지 27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4건의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서 회신했습니다. 주요 정책이나 민생과 관련된 안건 17건은 즉시상정 제도를 통해 30일 내에 회신함으로써 신속한 법령해석을 추진했습니다. 5월에는 법적 자문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161건의 자문의견을 회신했습니다.

14쪽,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입니다.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행정법령 350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법령이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15쪽, 행정형벌 합리화입니다.

행정형벌 합리화의 추진을 위해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7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전체 1만 1165개의 행정형벌 조항을 전수검토한 후 불필요한 형벌은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6쪽,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지원입니다.

자치입법권 및 지방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 129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령정비 과제에 대해서도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정비를 추

진할 예정입니다.

17쪽,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7월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약 24만 건의 법령정보를 기초로 공무원의 법적 질의에 일차적으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국민 공개 예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제교육입니다. 18쪽입니다.

2025년에는 연인원 8만 6000여 명에게 법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현재 연인원 7만 4000여 명에게 법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등과 헌법교육에 관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원 대상 헌법교육도 확대했습니다.

19쪽, 법제교류 및 협력입니다.

우리 국민·기업의 대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기관과 법령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더하여 최신 해외법령을 한국어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AI 기반 세계법제정보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처리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 수행을 위한 법개정 추진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관 개편 이후에도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회의 계류 중인 행정직원 20명 증원 입법 등을 통해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수사실적 제고입니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였으며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도 엄정하게 수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 구성원 역량 강화, 수사정보 수집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는 수사 인프라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송형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국가디지털포렌식시스템 도입, 보안성이 확보된 AI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청사 건립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는 수사성과 제고를 위한 외부 협력 강화입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 등과 적극 소통·협력하여 수사공백과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수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반부패·수사기관 및 국제반부패기구협의회와의 교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에 관해서는 한 3분 내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한 해의 성과를 되짚는 자리를 넘어 2기 공수처 처장으로서 3기 공수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하여 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 임기 중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보고인 만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다시 한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고 형사소송법도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 한두 곳의 변화가 아니라 수사체계 전반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 신설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합니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수처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 온 수입품이 아닙니다.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공수처를 방문할 때마다 놀랍니다. 공수처는 순수한 창작물이며 K-민주주의가 낳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해 본 결과 그 엔진의 성능은 고급 승용차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만큼 의미 있고 강력한 집행 잠재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하더라도 바퀴 4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에는 바로 그 바퀴 4개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뇌물 사건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뇌물죄는 공수처법상 가장 중요한 수사대상 중 하나이며 뇌물의 뿌리, 즉 그 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수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협소한 관련범죄 조항,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 중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부분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뇌물 공여자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 결과 뇌물수수죄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수처법상 가장 이례적인 조항인 관련범죄 조항을 특검법상의 관련범죄 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대상 조항의 공백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총경의 범죄를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된 법왜곡죄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불명확하고 정치자금수수죄는

수사 대상이면서도 정작 그 돈을 건넨 정치자금 공여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받는 자만 있고 주는 자는 없는 반쪽짜리 수사 이것이 지금 공수처법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인력입니다.

공수처의 검사는 23명, 그마저도 임기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40명, 임기 6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은 20명, 이 모든 숫자가 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수사관은 법률상 4급을 넘어서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7급으로 신입직원을 뽑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는 수사도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곳곳에는 정상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조항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새로운 검사를 뽑고 거의 1년마다 파견을 반복하는 파견공무원을 보내고 맞이하는 일로 매우 분주하였습니다. 수사 대신에 인사 업무로 한없이 바빴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보다 사람을 뽑고 보내고 다시 받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구조라면 그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검찰 견제 장치의 부재 및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조항의 미비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점을 달리하여 실제관계를 오해한 채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에는 없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재정신청제도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미비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검찰과 협업을 하는지에 관한 조항도 부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2기 공수처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이미 겪은 일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수사 등 공수처가 해왔던 지난 수사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었는지도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행착오라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시대가 요구하는 특별한 감각으로 이 문제에 답해 주시기를 업무 보고의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현재까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현황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가 갖고 있던 한계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보완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서영교 위원장에게도 와 본 적 있으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많은 부분을 느끼고…… 그런데 공수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요. 그러나 조직적으로, 예산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한 것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지 않고……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희 보좌진에게 와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직접 무엇이 왜 문제였는지 이야기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대로 수사하고 또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사법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에 보내도 메아리일 뿐 아무 성과가 없네, 수없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가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 무능한 공수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들의 한계 부분을 빨리 보완할 수 있게 국회도 끊임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끊임없이 소위가 진행되고 끊임없이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려 있을 때는—오늘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되고 또 국회에 함께 있는 보좌진들께 그리고 여기 법사위에 계시는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 또 조사관님들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또 성과를 내셔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늘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 더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께서 합의도 하신 것 같습니다. 협의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운 위원님이신데 안 계시니까 김기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제가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남부지검에서 보니까 이른바 양정원 씨 관련 사기 사건이라고 그래서 수사 결과 발표를 했더라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게 여러 보도자료 중에 보니까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됐다는 건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담당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결국 참고인으로 신분을 전환해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표 위원** 참고인 중지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킨 거라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보도자료의 취지를 보니까 거기에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피의자면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참고인이면 이의신청할 권리는 당연히 없는 건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고소사건일 것 아닙니까, 애초의 사건이?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고 하는 사건이 고소사건이겠지요.

혹시 답변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좀 이따 할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경위를 파악한 후에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이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제가 짐작하는 바로는 애초의 사건이 고소사건인데 고소된 사람,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가 아마 KICS상에, 정보망상에 참고인으로 바뀌서 아예 그냥 불송치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참고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못 했다는 취지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하면 그 자체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게 되면 보십시오. 만약에 피고소인이 1명이라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기표 위원** 그런데 만약에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공모해서 나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라고 하면, 한 3명 정도를 고소했는데 그중의 1명을 참고인으로 이른바 둔갑시켰다 하더라도 그 2명에 대한 피고소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해 주고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피고소인이 1명이면 그 사건 자체가 고소사건인데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도 짐작에 여러 명의 피고소인 중의 1명을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인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 불송치 결정에서 이의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반면’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물론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것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

적인 과제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법이 통과된 이상 그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법무부 입장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춰서 법의 공백이 더 없겠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의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해 가지고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해서 큰일 날 것처럼 보도자료를 쓴 것 같아요, 어감상. 그리고 그것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던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면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큰일 났다.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버리면 이제 이의신청조차 못 하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의신청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지금 소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1인 피고소인이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그다음에 여러 명이면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박탈했다는 말은 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오후에 확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245조의5 2호에 보면 보면 불송치 결정할 경우에 기록을 검찰에 보내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검찰에 보내서 검사가 90일 동안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미진하면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보완수사권 국면에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고 했던 것이 이게 내 사건이 안 되니까 성의껏 안 볼 것 아니냐, 그래서 누가 기록 두꺼운 것, 검사가 가서 실제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겠냐, 그러니까 이걸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고소장에 3명이 꼭 적시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송치된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2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백번을 양보해서, 아니면 1명인데 고소인이 아예 빠져 있는 사건이라든지.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법률의 초보만 뎀 사람이라도 그냥 A, B, C잖아요. 왜 한 명이 없어졌지 그 경위를 파악하면 단박에 해결될 것인데 이게 다른 관련 사건을 하면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검사가 90일 동안 보게 한 것을 제대로 본 건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일단 경위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 이게 마치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사술을 써서 이상한 방식으로 잠탈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재로 쓰이는 것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질의를 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도부터도 국가배상금 예산은 좀 추계 잘 해 가지고 지연손해금은 안 나오게 해라라고 했는데 장관께서도 작년에 2026년 예산 세울 때 잘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벌써 올해 3월 달 안에 다 떨어졌다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그러면 지연이자로 몇백억씩,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연 12% 이자 막 지급하고

그런 고리대금도 없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돈 지급하고 피해 배상받아야 될 사람은 그만큼 늦어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국가배상을 하는 것이 예산이 어려우면 저는 차제에 예산집행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같아요. 아예 이렇게 상시적으로 발생하지만 누가 봐도 분명히 집행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을 넣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비비를 아주 쉽게, 간편하게 그냥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맨날 하는 얘기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합니까?’ 법무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 방법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결산 국면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간략히 답변……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항 관련해서 첫 번째는 구체적인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배상금 관련해서 작년도 저희가 굉장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예결소 위까지는 그래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국회 최종 단계에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약 1400억 원에 불과하고 예비비로 약 2500억 원가량을 지금 재배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앞으로 국가배상금 배상액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와 증액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내용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꼭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되게 생산적인 질의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힘을 모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에서도 최대한 지연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산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고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번 기회에 범죄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이지만 지원해 드립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배상해 드립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는데, 범인은 잡았지만 그래도 국가가 이 피해를 지원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피해지원금이, 제가 만들었던 법인데요.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이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데 우리가 그걸 일시불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피해를 받아서 떠났는데 일시불로 받게 되면, 그나마 일시불이 아니면 최저생계비라도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일시불로 줘 버리면 최저생계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일시불로 주지 않아도 되게 법을, 나눠서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저생계비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피해자들이 그 옆에 국가가 있다는 걸 보여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잘 찾으셔서 예산 지원을 잘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광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규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오늘 장관님 불출석하신 것 굉장히 유감입니다. 두통이 그렇게 심하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로 안 좋으셔서 병가를 사용하시게 됐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래요. 아주 그냥 좋게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했던 주장 그런 것이 안 받아들여졌고 또 그에 대해서 그전부터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하다가 결국 사직서를 내시고 한 것으로 봐서 아주 좋게 봐 드리면 지난번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일부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직을 하신 것 같아요, 좋게 보면.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10월 2일에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개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도 있고요. 또 본인이 국회에 복귀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의원으로 보완하겠다, 그래서 사직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장관으로서 보완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수청·공소청의 개청에 따른 준비를 책임감 있게 하려면 최소한 이번 연말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은 장관님의 판단이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런데 왜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굳이 빨리 지금 사직을 하고 싶어 하나, 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민주당 당 지도부가 정해지고 이제는 그 당 지도부에서 할 일은, 할 임무는 명백해진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이것을 이제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소취소를 하려면 검사한테 공소취소하라고 지휘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지휘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가능합니다.

○**광규택 위원** 공소청이 발족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라고 지휘할 수는 없겠지만 공소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는 아직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누군가가 총대 매고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성호 장관이 형소법 개정하는 이런 것도 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런데 결국에는 공소취소해야 될 책임이 본인한테 돌아오게 생긴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바뀌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 책임을 안 지려고 빨리 사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원 위원** 위원님, 안 계신다고 참…… 소설을 쓰십니다.

○**곽규택 위원** 제가 장관님 나왔으면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장관님이 안 나오시니까 차관한테 대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장관님께서 사직을 표명하신 것은 그래도 국회에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을 외부에도 누누이 설명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모셨던 장관님은 어느 자리에 가시건 이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무부차관도 이제 차관직 끝나면 공소청으로 복귀하게 돼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은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검사 신분이 아닌 신분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검사를 오랫동안 했던 차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결국에는 그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그 청에, 공소청에 결국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형태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검찰로서는, 공소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그 부분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가정적 사건이 안 생기면 좋아요. 안 생기면 좋은데, 지난번 형소법 개정 과정을 한번 보지요. 그러면 사실 그때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맞느냐 이에 대한 쟁점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범죄피해자 분들의 요구도 컸었고. 이런 것이 한창 쟁점일 때 여당에서 주도로 한 형소법 개정안에 뭘 끼워 넣기 했습니까? 공소기각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어요. 전혀 쟁점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형소법 안에다가 그것을 넣어 가지고 같이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개정된 조항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반영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무부차관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항을 더 면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말이 바뀌어 가지고 ‘꼭 판례대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당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판례를 구

체화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공소기각 사유를 너무 확대하면 이것 남용될 우려도 있다 하
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 조문을 보시면 형소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법원
에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조항, 그 사유가 너무나 확대돼 있어요. 그리고 불명확해요. 어
느 판사든지 그 조항의 어느 호 하나 걸어 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이에
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것 있
잖아요, 대법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들이 줄줄이 ‘그 공소기각은 합
당하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차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조항에 대한?

○**법무부차관 이진수** 실무적 차원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지금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판상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공소기각 주장을 먼저 할
것이라든지 또한 그 사유가 중대한 수사상 위법행위와 현저한 공소권 남용으로 되어 있
는데요. 판례에서 기존에 해석해 왔던 여러 요소들 중에 일부만이 규정되어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다시 이에 대한 개정안 준비해서 내도록 하
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앞으로 실무상 진행되는 과정들을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당시 공소기각 부분이 슬쩍 끼워 넣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법안에 들
어 있던 겁니까? 그게 슬쩍 끼워 넣은 겁니까, 아니면 박은정 의원님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원래 들어 있는 겁니까?

○**박은정 위원** 원래 들어 있던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원래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지요? 처음부터 그 법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당시에 한동훈·주진우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끼
워 넣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두 공소기각에, 2항·3항입니까? 그 내용이 원래 개
정하고자 하는 박은정 그리고 김용민 의원 법안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고
스란히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이 박은정·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6월인가에 대
표발의한 겁니다. 그 법안은 서영교도 공동 대표발의한 거고요. 그 법안은 우리가 시민사
회계에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의뢰도 한 것이고요. 그
래서 일찌감치 그 내용은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법안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법무부차관님, 그래서 이게 받기 전의 법안이고요 박은정·김용민 의원이 낸 법안에 2
호·3호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슬그머
니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 허위사실이고 거짓말이다, 그래서 법적 조
치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승원 간사님?

○**주진우 위원** 그 법안의 수혜자가 누구인데요, 그러면? 그 법안의 수혜자가 누구입니
까?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이 내용은 소위가 토론할 때 3회 토론 때부터 이 내용이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주진우 위원**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법안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서영교** 수혜자가 누구이긴 누구입니까?

○**주진우 위원** 이재명 대통령 즉각 겨냥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이 내용의 판례는 화물트럭을 훔친 사람이 그 트럭을 운전했는데 그자를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해서 처벌합니다. 그 사람이 처벌받고 나오자마자 다시 그 사람을 화물차 절도로 또다시 기소하는 겁니다. 그 사례가 대법원의 판례로 있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다 있는 건데 거짓말한 부분은 다 법적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안은, 제가 다시 하나 드릴게요.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김용민·박은정안에 들어 있는 법안 이것을 논의하면서 개정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김용민·박은정 법안은 제가 법사위원장 되기 전에 대표발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법무부차관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은근슬쩍 한밤중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마저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현저히 소추권의 재량을 넘어섰다’, ‘현저히’, ‘중대한 수사 위법’, ‘중대한’과 ‘현저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률적 용어예요.

○**주진우 위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과 아예 상관도 없이 만든 법인데 이걸 왜 법 만든 사람과 상관도 없이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진우 위원** 국민들이 웃습니다. 어떻게 느끼는지 민심을 들어 보세요.

○**위원장 서영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으니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민주당안에 없잖아요, 그것은. 김한규 의원안 아니에요? 김한규 의원안에 이게 있어요? 없잖아.

○**김승원 위원** 검찰의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것은 박은정·김용민 의원이 먼저 대표발의안 안에 있고요. 김한규 의원님 안은 TF안으로 여기에 없는 여러 가지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건 이 사람들이 뭐냐면 ‘김한규 의원안에 없구나’ 이래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가 된 거지요. 이건 박은정·김용민안에 있었던 겁니다.

○**박형수 위원** 민주당의 공식안이잖아요, 김한규 의원안이.

○**김승원 위원** 아니, 검찰의 간첩 조작사건 때문에 나온 판례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은 검찰이 유우성 간첩단 사건으로 소추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원래 있던, 이게 2호에 있는 거예요, 원래 법안에. 원래 법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도 발언권을 줘요, 좀. 혼자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서영교** 제가 그래서 팩트체크를, 의사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형수 위원 신상발언 취소,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주든지.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제 발언시간에 할게요, 이것은.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것은 팩트체크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틀렸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규 위원 뭘 팩트체크를 위원장 혼자서 다 합니까? 팩트체크는 토론 과정에서 팩트체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나가서 발표하세요, 법적 조치할 테니까.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애타는 마음으로 장미란 씨를 기다리고 계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도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동거인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불과 두 세 시간 뒤인 같은 날 밤 9시경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연락이 돼 안전이 확인됐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통신기록을 확인한 결과 A 경장과 장 씨 사이에는 통화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결 과정에서도 팀장·반장 보고나 이중 확인은 없었습니다. 경장 1명의 시스템 입력만으로 사건이 끝났고요 관련 규정에 따른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조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이 7월 19일 재신고할 때까지 두 달 넘게 초동조치와 신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주거지와 도로변 CCTV가 정상 작동했고 영상도 보존돼 있었지만 재신고 시점에는 30일의 보존기간이 지나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종결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재신고 한 달 가까이 지난 8월 14일에야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장은 현재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3개월이 지난 8월 20일에야 공개수색으로 전환해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관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어요. 장윤기 사건에서 수색팀 고의적 부실수사와 증거 은닉 확인됐고 이번에는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A 경장은 실종사건을 접수해 혼자 판단해 그날 종결했습니다. 특히 여성 실종의 경우 매우 위험도를 높게 판단하는 사안인데도 A 경장은 112 신고 접수 단계에서 사건 종결하면서 위험도 관리하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부분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관님, 사건 송치되면 부족한 부분 없는지 기록 꼼꼼히 살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검찰개혁 취지인 수사·기소 분리 잘 작동하려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장치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 드려야 합니다. 가족이 경찰 말 믿고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두 달 동안 CCTV 사라졌고 실종자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시행된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이나 부실수사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국민들의 피해 없는 형사사법체계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큼니다. 모 국가기관에서 공수청이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고 법사위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법무부차관님, 이 중요한 형사사법절차 개편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서로 협력해서 빈틈을 메꾸기에도 모자랄 시간에 다른 기관 하지 말라고, 일 못 하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 이것 맞습니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것 책임 누가 집니까?

차관님, 앞으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 갖게 되면 권력 무소불위로 휘두르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견제해야 하는 것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것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관한 일이어서 제가……

○**김남희 위원** 국가기관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금 어차피 형사소송법 개정이 통과된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긍정적인 부분까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어느 기관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이대로 가면 국민들 불안만 커집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누가 책임집니까? 장운기 사건, 제주도 실종사건 이런 사건이 또 생기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특정 기관의 권한 박탈, 국가정책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개혁의 목표는 어떤 수사기관도 전횡을 할 수 없고요 국민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체계 만드는 것입니다. 기관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국민들의 피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기능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박탈했듯이 경찰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관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 국민들 피해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점 제대로 파악해서 필요한 대안들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지금 워낙 대대적으로 큰 변화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한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

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국민들의 피해 없는 그런 검찰개혁 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기관이 한마음으로 협심해서 같이 제도를 잘 만들어 가야 될 시기입니다. 기관들끼리 싸우고 기관들끼리 경쟁하고 기관들끼리 서로 저것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협조, 제대로 된 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법무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평론을 할 때부터 정성호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고요. 그랬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성호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망이 크다, 이 얘기를 오늘 오시면 하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너무 유감입니다.

사실 정성호 장관은 법지식도 있고 정치적인 역량도 계신 분입니다. 다선 의원입니다. 본인이 얼마든지 방향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냥 물꼬를 따라가면서 걱정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안 오셔서 유감이고요.

사직서에 ‘주요 개혁을 완성했다’ 이렇게 적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차관님도 그래서 ‘국회에서 더 큰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더 큰일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뭐가 개혁이 완성되었지요? 지금 여당 위원님도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데 개혁이 완성된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주요 골격이 되는 공소청 등 정부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장관님께서……

○**김민전 위원** 관료들이야 책상 위에서 법안 하나 개정했다, 하나 업적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정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념에 관계없이 많은 학자들과 또 시민단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검찰청 내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개혁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국가 수사 역량이 총체적으로 붕괴된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형사사법절차가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변호사로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앞에서 차관님도 업적으로 열람·등사권을 보장했다 이것을 얘기하시던데요. 이것도 보면 245조12의 제2항에 보면 ‘수사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또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조항이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요.

제가 법무부장관님 오셨으면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법무부장관님 취임하자마자 하신 일이 검수원복의 시행령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문을 본인이 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는 듯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특히 이것은 여권 언론인이 얘기한 것이지요. 검찰의 주요 검사들에게 공소취소를 해주면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 이 수사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은 야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설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거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공소기각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완수사권조차도 공소취소와 바꿔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께서도 근거가 없음을 상당히 인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바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신중히 판단해라’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항소 포기가 이유가 없다, 해야 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검사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검사들 다 좌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법무부가 당해도 싸다 이런 얘기 들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연어파티, 술파티 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제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업무 중에 SNS를 썼다. 업무 중에 SNS를 언제 썼어요?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그것을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양자역학도 아니고, 미래가 과거를 규정하는 겁니까? 법무부와 검찰과 그리고 정치권이 박상용 검사에 계속 압력을 주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글을 쓴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전달하였습니다만 딱 한 번 장관님의 의사를 대검차장에게 전달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외압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은 실체 관계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박상용 검사 관련해서 SNS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대검에서 1차로 징계요청이 온 것은 박상용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셨듯이 변호인

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또한 어떤 제3자에 대한 수사를……

○**김민전 위원** 그 변호인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녹음파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3자에 대한 수사 부분을 언급하면서 어떤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수사절차상 적법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된 줄기인 정계 사유입니다.

○**김민전 위원** 항소 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에도 그 당시 담당 검사들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사인을 안 해 줘서 못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만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을 다 좌천시키는 것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선고가 더 높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2명 내지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검사가 구형했던 것보다 선고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항소합니까?

○**박형수 위원** 무죄판결이 있잖아요. 무죄판결이니까 당연히 항소하지요. 뭐 알지도 못 하면서.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법원이 선고를 더 높은 형량을 때렸는데, 대검 예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훨씬 더 낮게 선고했을 때는 항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더 높게 선고되어 있는데 항소한다, 이것은 대검 예규상 맞지 않은 겁니다.

○**김민전 위원** 그것 때문에 500억의 환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 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술 위원** 차관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님이 구성원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장관님께서 구성원이십니다.

○**손술 위원** 노태약 대법관 후임 관련해서 추천은 1월에 마무리가 됐지요? 1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1월 21일입니다, 추천이 완료된 게. 그리고 209일 동안 제청이 없었어요. 대법원장의 제청이 없어서 209일 동안 대법관이 지명이 되지 않은 이 일은 심각한 헌법 공백 상태가 유지된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대법관님 공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솔 위원**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200여 일이 넘게 제청이 안 된 적이 없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대통령 탄핵, 대선 이런 때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길어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요일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보셨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신문지상으로 간략히만 내용을 봤습니다.

○**손솔 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후보를 추천한 바 있는데 제청을 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려고 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 적 없지요? 대단히 이례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법률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제가 이 대법관 추천 관련해서 헌법 조항을 보니까, 유신헌법 전 조항을 보니까 대법관 관련해서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다’ 원래 이렇게 헌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유신헌법 전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손솔 위원** 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가 유신헌법 때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제청’ 이렇게 됐습니다. 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통해서 사실은 협의와 조정, 균형과 견제 이런 게 있었는데 유신헌법 때 이게 사라지고 87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민주적 견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의 절차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경필 행정처장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린다고 하면서 후보자들에게 전화했었어요. 이 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법무부장관님 전화받으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게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하신 게 아니고 후보자였던 분들께 연락하셨던 것으로……

○**손솔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법률에 따른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무시한 것도 황당하지만 새로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꾸릴 거면 위원회 위원들한테 전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법무부장관님한테는 전화를 안 했을까요? 법무부, 들은 바 없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손솔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전화를 안 하고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뭘까요? ‘후보자들 지금 4명 안 된다, 지금 4명 안 된다, 사퇴하라’ 이런 뜻으로 전화한 것 아닙니까, 노경필 행정처장이? 그것이 아니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노경필 행정처장이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려고 한 것도 법률을 무시한 행태라고 생각하지만 후보자들에게 전화한 것, 새로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후보자들에게 전화한 것은 명백한 사퇴 종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

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님은 추천위원회 구성원이기도 하니까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높은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이번 주에 이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다 보고 있습니다. 원래 유신헌법 전 조항의 취지에서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가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했던 부분인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법률구조공단이 산하기관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법률구조공단 보수규칙을 보면요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보수규칙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고정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한 기준을 넘어 실제로 근무했다면 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조항, 규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법률구조공단에. 그래서 지금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고정된 관리업무수당만 받고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변호사님들만 대상입니까?

○**손솔 위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손솔 위원** 그리고 문제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규칙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규칙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그 판례에도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그 보수규칙의 내용과 그 내용이 말씀하신 판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규칙이 왜 그렇게 규정됐는지 여부 등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데 법원의 판단 취지는 실제로 근무했다면 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긋나는지는 확인하시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시간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관련해서 하급심 파기환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파기환송이……

○**손솔 위원** 그게 대통령기록관으로 갔다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어떤 판결을 말씀하시는지……

○**손솔 위원**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 취소 소송 관련해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솔 위원** 예, 최근에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이게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기록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뜻인데 이 내용이 맞지 않고 오히려 기록 자체는 있는데 기관이 바뀌어서 볼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소송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행정소송법상 보완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야 할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행정소송과에서 그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질의하시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님 등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들어와서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는 그 순서로 정리하고 서면동의가 들어온 내용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차관님, 대한민국 검사는 홍길동 검사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듯이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기 조직을 검찰청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정부조직법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공소청인데 공소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선뜻 받아들여지시던가요? 어지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법제처장님, 법원 출신이시라서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김민석 씨가……

○**박균택 위원** 예의를 좀 지킵시다.

○**곽규택 위원** 조희대 씨라고 하잖아요.

○**김태규 위원** 조희대 씨는 팬찮고요?

○**박균택 위원** 왜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래요?

○**김태규 위원** 내 순서에서 좀 조용히 하세요!

○**박균택 위원** 예의를 지키란 말이야!

○**김태규 위원** 뭘 예의를 지켜! 당신들이나 지켜!

○**박균택 위원** 예의를 지켜! 너무 무례해! 아주 습관적이야. 그것은 인성의 문제야. 조심하라고!

○**곽규택 위원** 조희대 씨나 김민석 씨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지.

○**김승원 위원** 동료 위원이잖아요, 동료 위원.

○**김태규 위원** 자,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

다.

- 박균택 위원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아주 습관성이야!
- 김태규 위원 조용히 하세요!
- 박균택 위원 예의를 지키란 말이야!
- 김태규 위원 조용히 해!
- 박균택 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
- 김태규 위원 당신이나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디다 대고!
- 박균택 위원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 김태규 위원 뭘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 박균택 위원 나이나 기수나 전임 시기나 모든 게 내 후배야.
- 김태규 위원 얼마나 나이 먹었는데? 여기가 나이 따지는 데야?
- 박균택 위원 선배한테 예의를 지키라고. 너무 무례해.
- 곽규택 위원 뭘 갑자기 족보를 따지고 그래요.
- 김승원 위원 예의를 좀 지키십시오.
- 박균택 위원 정도껏 해야지.
- 김태규 위원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자꾸 떠들어!
- 박균택 위원 조용히 해 줄 테니까 앞으로 예의를 지켜.
- 김태규 위원 좀 조용히 해! 왜 그렇게 시끄러워!
- 박균택 위원 앞으로 조용히 해.
- 김승원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는 것 아닙니다.
- 박균택 위원 예의를 지키면 내가 앞으로 안 그럴 거야.
- 김태규 위원 질문 좀 합시다. 시간을 좀 멈춰 주든지.
- 박균택 위원 앞으로 예의를 지키면 내가 조용히 해 준다고.
- 박형수 위원 아니,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하는 것은 뭐야 도대체!
- 김태규 위원 지금 이 사람이 법기술원장이라고 한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도 검찰총장은 있는데 공소청이 되듯이 대법원도 대법원장은 있으면서 대법원이 법기술원으로 대법기술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 법제처장 조원철 그 표현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 김태규 위원 아니,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법제처장 조원철 여당 대표께서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사실……
- 김태규 위원 그러니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왜 또 안 되겠습니까? 공소청은 되는데 또 대법기술원은 왜 안 되겠습니까? 그 논리를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법제처장님한테 여쭙봤습니다.
- 법제처장 조원철 일단 공소청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청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명칭에, 헌법에 그런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청을 이루는 검사의 명칭은 있는데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으로 할지 그 검찰청 본래의 업무인 공소에 집중해서 공소청으로 할지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 네 분을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도 안 했는데도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법기술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법무부차관님, 이것은 공무집행방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특수공무집행방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검사는 이제 민간인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이지만 차이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소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김태규 위원** 공판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들도 의뢰인을 위해서 공판 진행하는 데 참여하지 않습니까? 검사도 그렇게 참여하는 것뿐이지요. 사실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공소 진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굳이 검사라는 제도를 뭐하려고 놔둬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데도 검찰에서 구속기간 20일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장하면.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수사도 안 하고 수사권도 없는데 구속을 20일 동안 하는 근거는 뭐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사권을 전제로 논리가 설명되고 있었 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태규 위원** 구속이라는 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사 주체도 아닌데 자기가, 증거를 인멸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증거를 채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주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20일 동안이나 왜 민간인을 잡아 놓고 있냐 말 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전제로 해서 구속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법정에서 구속사건도 1심 재판 기간이 6개월이듯이 판사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구속기간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그러면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졌으면 그 20일도 없어야지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지요.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시다시피 지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치를 받는 것이고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법을 바꿔 놓으니까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 기이한 현상을 차관님께 묻고 혹시 어찌 생각하는가 의견을 여쭙본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구속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검사가 구속 송치가 오게 되면 피의사실에 대해서 묻게 되고 수사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증거의 부족함을 아마 점검하게 될 것인데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관계 조사 후에 작성된 문서 등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우려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구속을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고 그래서……

○**김태규 위원** 또 평하시게요? 아니, 왜 제 발언에 대해서 나온 답변을 왜 평을 하세요?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것은 국민들께 정리를 좀 해서 알려 드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 걸고 하세요, 7분을.

○**김승원 위원** 의사 정리하는 과정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의사 정리입니까, 본인 의견입니까, 저게?

○**위원장 서영교** 제가 김태규 위원하고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위원장이예요, 위원장.

○**김태규 위원** 아니,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라고 위원장 시켰지, 높은 위치에서, 그러면 그 의견도 더 높은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 의견도 더 높은 거냐고.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아무 때나 말씀하셔도 됩니까, 그러면? 혼자 하시면 되겠네, 회의를.

○**위원장 서영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박형수 위원** 발언권 정지하세요.

○**김태규 위원** 그래서 더 고귀한 의견이세요?

○**위원장 서영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국민들께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어 옵니다. 검사의 시간이지요, 구속된 사건도. 그런데 여기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20일이지만 그 사이에 기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논리를 더 만들어 내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 내용을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하기 위한 시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경찰에 있던 사건이 검찰로 올라온다고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하지만 그 필요한 수사의 내용들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요구하던 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법대 가서 강의 한번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보완수사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존재하고 필요한 수사는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 하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지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네, 그러면 경찰이 했던 것으로 끝나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사가 구속 20일을 가지고 있는 동안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채워 나가는 것이고 그게 부족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면 20일 채우지 않고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태규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해를 시켜 드리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김태규 위원님, 국회 예절 좀 다시 배우세요.

○김기표 위원 그만 좀 하세요.

○김태규 위원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회의 정상입니까?

○김승원 위원 의사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조용히 하세요, 손가락질 치우고. 어디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요, 지금?

○김태규 위원 제가 광규택 위원한테 손가락질 했습니다. 왜요? 광규택 위원한테 했어요, 광규택 위원한테.

○위원장 서영교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 손가락질을 어디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 위원장에게 손가락질을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안 되지요!

○김승원 위원 안 됩니다. 국회 예절 좀 새로 배우세요.

○위원장 서영교 손가락질을 위원장에게 하는……

○박균택 위원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교육이.

○김태규 위원 아니, 회의를 코미디로 만드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회의를 코미디로 만드시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그러면 위원장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런 게, 이런 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입니까?’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내부에서도.

○박균택 위원 박형수 간사님, 후배 교육 좀 잘 시켜 주시지요.

○김태규 위원 내가 누구 교육받을 수준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 박균택 위원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김태규 위원 본인 교육이나 제대로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 박균택 위원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김태규 위원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에요.
- 김동아 위원 아니, 이의제기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하시잖아요.
-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경고합니다.
- 김태규 위원 경고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 위원장 서영교 ‘경고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까지 이야기했고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 박형수 위원 협박 좀 그만하세요. 중지시키려면 중지시키든지 퇴장시키려면 퇴장시키든지.
- 김승원 위원 협박이 아니라 새로 배우세요, 좀.
- 김태규 위원 같이 언쟁을 벌여졌는데 민주당 위원은 괜찮고 국민의힘 위원은 경고를 받아요.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 박균택 위원 나는 무례함을 따졌을 뿐이에요.
-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국민께 경찰의 수사가 끝나서 검사에게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보완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위원장에게 하면서 ‘이런 게 정상입니까?’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 김태규 위원 뭘 손가락질을 했다 그럼니까, 뭘 손가락질을?
- 박형수 위원 그렇게 낙인 찍지 마세요. 위원장 품위를 지키세요.
- 김승원 위원 그러면 안 돼요.
- 김태규 위원 누가 손가락질을 해요, 누가 손가락질을?
- 위원장 서영교 그것은 박형수 간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균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야당 위원 말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가를 하시고. 그거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 위원장 서영교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박균택 위원 혼자 회의합니까, 그런데?
-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소위 하는 동안 들어오지 않아 놓고 자꾸 그것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균택 위원 정상적인 소위 한 번 했잖아요, 우리 들어와 가지고.
- 위원장 서영교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추가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균택 위원 법사위원장 끝까지 하려고 해 가지고……
- 박은정 위원 정상적인 소위였어요.
- 위원장 서영교 정상적인 소위였고 정상적인 진행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있었고 여기서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하는 과정인데 혹시나 모르실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알려야 할 의무와

임무가 있는 겁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3인 서면동의)

(12시27분)

○위원장 서영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께서 2026년 8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법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서 정한 신속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그리고 대법관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법원행정처장이 했다고 하는 사유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출석 요구하기 위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 서영교 서면동의서에 김승원 위원 외 세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망신 주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승원 위원 직접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박형수 위원 이게 말이 돼요?

○곽규택 위원 뭘 이야기해요? 아니, 그동안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관행을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관례를 중시하면서……

○위원장 서영교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법무부 업무보고에 왜 대법원장을 불러요?

○곽규택 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이유서가 말이 돼요? 아니, 무슨 긴급현안질의입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지, 왜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김태규 위원 다 아는데 민주당만 모르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리고 손을 내려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무슨 표결은, 무슨 표결이야. 이걸 뭐 하려고 지금 증인을 불러요?

○박형수 위원 다 나왔잖아. 노경필 행정처장이 다 얘기했잖아!

(장내 소란)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안건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안건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승원 간사님을 비롯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의사일정 변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 이렇게? 혼자서 다 하세요, 혼자서.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다고 제기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모두 퇴장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2시30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2026년 8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법관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에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지난 8월 19일 우리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장 역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회의 출석 요구를 회피했는데요.

당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6시 넘어서 퇴근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였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대법원에 알아보니 서면 제청도 인사혁신처에만 발송을 했고 인사혁신처에서 청와대로 갔는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 등 국회와 또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출석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의결하게 되

었고 8월 31일 전체회의에 꼭 조회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서면동의를 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종결 부탁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없는데, 또 하셔도 되는데……

○손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씀 잠깐, 손술 위원님까지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손술 위원 조회대 대법원장이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엇그제 노경필 행정처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본인은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모른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조회대 대법원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9일이라는 시간 동안 뭘 고민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노경필 행정처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놓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의 공백 상태를 자초한, 이 위험적 상태를 방기한, 방치한 책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국민께 설명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진짜 물어보려면 반드시 조회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황도 이 상황이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법원으로부터 9년형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도 법원으로부터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민·한덕수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이상민 사건은 선고를 7일 앞두고인 것 같고요, 대법원 선고를. 그렇지요? 특검법에 의하면 3개월 내로 상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한덕수 사건은 이틀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된 것을 이틀 남기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둘을 한꺼번에 끌어올려서, 또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윤석열 사건도 같이 가져오려고 한대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서, 2부에 있던 것을 끌어올려서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시켜 버렸습니다. 저희는 한번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위헌하고 위법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그리고 헌법에 의거한 후보추천위를 무효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그리고 이것을 직접 주도한 조회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국회법 121조인가요, 국회법에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렇게 의결했는데 나와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정리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으로 할까요?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김한규 위원** 언제부터 국회가 쇼츠 찍는 장소가 돼 갖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좀 불편한데요. 어느 당이든 다 마찬가지로이긴 한데 그런데 본인들이 발언할 때 보좌진들이 찍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는 본인 위원들이 발언하지 않는 순간에도 아예 삼각대를 세워 놓고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최근에 과방위에서는 다른 당 위원이 책상 위에 뭘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촬영해서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위원이 발언할 때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저희 위원들 옆에, 방금에도 좀 전까지 국민의힘 보좌진이 삼각대를 아예 세워 놓고 계속 찍고 있었는데 해당 위원이 발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발언할 때만 촬영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원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의사진행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방송사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도 보좌진들이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될 것,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보니까 자기 위원을 찍는 것까지는 좋지만 관계기관 참석자를 향해서까지 그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더구나 비공개회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를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 기준을 좀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9분 회의종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법무부 소관

4. 업무보고

가. 법무부

나. 법제처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어제 독립몰수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많은 의원들 또 저 발의도 하고 협력을 해서 통과가 됐습시다라는 법무부에서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신, 확신을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침 중앙지검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던데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오늘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김옥숙 여사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부정 축재한 재산 같은 것들이 잘 발견이 되고 또 몰수 내지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 독려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중앙지검 그 해당 부서에도 격려 말씀 전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박균택 위원 오늘 업무현황 보고 내용 잘 봤습니다. 법무부가 정말 좋은 일들, 많은 일들 많이 했더군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이슈들도 많고 정치적인 쟁점도 많고 했습시다라는 그 논쟁과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훌륭하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차관님이 또 주변에 함께 일하시는 참모들이 장관님 잘 보좌해서 함께 노력한 결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가 여러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모두 일을 잘했지만 특히 국제법무국입니까? 활동이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실적이 수치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론스타, 엘리엇을 비롯해서 10건 이상의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했거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국제소송, 국제분쟁 한 10건이 넘는 것을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역할을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것 승소한 덕분에 7조의 국가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한 것 같고 심지어는 정부 차원에서 들었던 74억 가까운 소송비용까지도 환수를 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국제법무국의 활동과 관련해서 소송 지원하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제투자분쟁과입니다.

○**박균택 위원** 국제투자분쟁과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박균택 위원**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활동을 잘하고 또 국부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고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좀 잘돼야 할 텐데 국제법무국 여기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알지 못하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말씀해주셔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예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국제법무국의 제한된 검사와 전문 사무관, 임기제 사무관들이 정말 힘을 합쳐 가지고 국가소송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컨대 지급해야 될 법률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든지 그 지급이 지연돼 가지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 국제법무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증액과 함께 소송비용에 대한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예산 부처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론스타 사건 1건을 대응 잘하는 바람에 국가의 재정이 7조 원 빠져나갈 위기를 막아 낸 이런 부서인데 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그리고 정부에, 각 부처에 국제적 분쟁이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제법무국의 역할이 더 증대가 되어야 되고요. 정부의 법률가로서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균택 위원** 정말 잘해 주기 바라고, 만약에 예산처가 예산 반영을 충분히 못 했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증액이 돼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내년 국제법무국 예산이 약 63억의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일 텐데요.

○**박균택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네요. 1조의 손실을 막아 낸 기관이 74억의 소송비를 들

여 가면서 분쟁에 대처했고 승소를 통해서 74억의 소송 비용까지 환수해 낸 부서에 대해서 63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따져도 이런 예산편성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이것과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자체가 2025년에 1000만 원대에서 9000만 원대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그라미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일선에서 예산집행을 한 걸 보면 편성된 예산의 3분의 1밖에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문화 교육, 스토킹 범죄 대응 역량 강화, 학교 폭력 예방 활동, 교사의 의견 청취 제도 자문료,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또 예술 치료 예산 이런 것들이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아마 뭔가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느라고 바빠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했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마 셋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경우라고 할지라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뭔가 손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대검 형사부에서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담당하는 과와 그다음에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담당하는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다중 피해라든지 강력 범죄에 관련된 담당 부서가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한 성폭력 피해자 관련된 예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트랙의 피해자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술을 통한 심리 치료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까지 업무를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결국 검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활동을 못 해서 집행이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독립몰수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독립몰수제는…… 기존의 몰수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부수 판결로서 압수물에 대해서 몰수 판결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유죄가 전제되어야 몰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요 독립몰수제는 피의자가 기소 중지가 되거나 사망하는 등 피의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불법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나 물건에 대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돈을 빼갔는데 그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어서 그자를 못 잡았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돈을 우리가 정지시키고 뺏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런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죄가 정말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및 디지털 성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에 있어서 피의자 특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몰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조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독립몰수제도의 필요성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반영해 주셔서 가지고 이번에 법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어제 그 법안이 통과되었지요. 그런데 계좌에 있는 돈이나 이런 거는 외국으로 나가면서 다 갖고 나가지 않을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계좌 같은 경우에 현금인출책이라든지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외국으로 쉽게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동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피의자가 처벌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몰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범죄자가 외국에 있어서 데리고 와서 유죄를 때리기 전에는, 그전에는 그자의 돈을 뺏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자가 밖에, 외국에 있으면서 기소가 중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틀림없이 그 범죄로 인한 비용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전부 다 몰수시켜서 현재 있는 피해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법안인 것이고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주 의미가 있는.

범죄는 진화합니다. 진화하는 만큼 법이 빨리 못 움직여서 범인의 수익인지 틀림없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뺏아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박근혜 의원님 등 몇 분의 의원님이 그 법안을 냈고 국회 법사위가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의미 있게 국민들께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도 많이 있으니 법을 잘 만들어서 또 그것을 국민들께,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고 아니면 피의자에게 다시 더 많이 뺏아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시행이 1년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법원 규칙 개정과 하위법령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면밀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1년 있어야 시행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빨리 시행되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또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요. 어제 주택법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후 시행이었는데 어제 바로 수정안을 내서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 저희가 했었거든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것은 빨리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차관님,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윤석열 수용자가 1년 동안 대통령 연봉의 6배에 가까운 17억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치금이라는 것은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1일 사용 한도액이

2만 원이고 주로 의류, 침구, 약품, 일상 용품, 도서 이런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구치소 재구속된 후에 3만 9000여 회에 걸쳐서 영치금을 받았고 그중에 한 99% 이상을 다른 계좌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4회 정도 출금이 된 거거든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남부구치소에서 한 11개월 동안 1억 7000만 원 정도 영치금을 받았고 이걸 또 출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확인을 했더니 수용자 신청이 있으면 보관금을 배우자나 다른 곳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치금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최대 금액이고 초과하는 거는 계속 출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횡수도 제한도 없고 계속 입금을 받고 있고 그러면 17억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란범죄자가 가만히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고 있으면서 17억 수익을 거둬 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불로소득이고 이것은 사실상 정치인을 후원하는, 사실은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법무부에서 문제 해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17억 원이. 그런데 또 윤석열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저게 특정한 유튜브에, 특정 팬 카페에서 윤석열·김건희뿐만이 아니라 김용현·이상민·노상원 그다음에 내란, 서부지법의 폭동 청년들에 대한 계좌번호까지 올리면서 입금을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직적으로 영치금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상 이것은 윤 어게인의 탈법 정치 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이라는 거는 한 2000만 원 이상 연간 후원도 할 수가 없고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이것은 법적인 신고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 건데 이 영치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제재나 이런 거 없이 하고 있고 17억을 윤석열 내란수괴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교도소 교정본부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해서 법무부에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까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박은정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광복절 앞두고 논란이 된 연예인의 증조부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됐거든요. 광복 81주년 맞이한 상황에서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는데 최근에 이 연예인 증조부, 이름도 특정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연예인 증조부의 또 오늘 보도를 보면 군포에 2700평 땅이 1910년대 토지의 자료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친일 가문의, 안양역·군포역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그러니까 증조부가 의사로 재산을 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 친일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아까 차관님께서도 보고하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안이 오는 12월 3일 날 시행되면서 아마 위원회를 꾸린다고 하셨어요, 16년 만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이 연예인 증조부에 대해서는 이게 친일재산 대상인지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해당 연예인의 증조부가 민족문제연구소나 과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국적이라든가 일본 의회의원이었다거나 귀족 작위를 받았다거나 중추원 참의였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기타 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이것은 친일재산으로, 반민족 행위자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해당 증조부는 1916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총독 정치를 시인하고 내선 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한 대정친목회 간부 직책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친일재산귀속법하고 일제강점화,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 따르면 단체 활동의 성격, 주도적 역할, 내선 융화 관여 정도 그리고 식민 통치 협력의 대가성 여부를 종합 심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후손들이 그 친일재산을 승계해서 부를 축적하고 친일한 경우에 삼대가 평평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분노 앞에 법무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 12월 달에 발족하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준비단이 구성되어서 12월 발족을 위해서 실무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최소 환수 예상되는 금액이 32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최장 5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기존의 자료들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근무 안 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오늘 병가를 사용해서서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앞으로 출근을 안 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오늘은 병가를 사용하신 상태고요 다음 주는 주말 상황을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중수청·공수청 출범이 40여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대검에도 사람이, 총장도 없고 총장 직무대행도 없고 법무부장관도 안 계시면 누가 지휘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까지 장관님께서 지휘를 하셔서 가지고 저희가 수행을 해 오고 있고요. 대통령령과 법무부 부령 등 개정해야 될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기한 내에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까 박은정 위원이 윤석열 영치금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고받아 온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7일까지 13개월간 무려 18억이 넘었어요. 18억 3000만 원이 넘었는데 이렇게 영치금이 들어오면 교정공무원이 그것을 다시 계좌로 옮기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이성윤 위원 송금해 주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일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18억을 출금하는데 4471번을 뺐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윤석열 영치금 이체하는 데 정말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하셔서 가지고…… 아까 박은정 위원도 말씀했지만 정치후원금 처리 창구처럼 보여요. 점검하셔서 가지고 그걸 개선 좀 하십시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18억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 정말 제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하지 않고 다른 일반인이 하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개선사항을 연구 검토하셔서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찰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지금 국힘 의원 수사 중에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어떤 사건으로……

○이성윤 위원 대전에서 옛날에 대전MBC 사장 시절의 배임 사건, 법카 1억 4000만 원 사용한 것 그 사건하고 남부지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중에 있지요? 보고 받지 못하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특별히……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직전에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그것 송치된 지가…… 이게 작년에 송치됐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단’이고 ‘보수 여전사다’ 이런 말까지 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만 가면 이 두 사건이 감감무소식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총선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법카 1억 4000만 원 썼다는 업무상 배임 사건은 혹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사건은 대전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도 수사 중이에요? 송치가 언제 됐는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송치 일시는 상당히 지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송치됐으면, 바로바로 해결했으면, 처리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송치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차관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언제 처리할 것인지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소청 직제를 만들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직제는 지금 확정됐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NDFC(디지털포렌식센터), 과학수사부 그다음에 범죄담당관실인가요, 범죄정보기획관실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정보기획관실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 기획관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직제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지금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대검에서는 NDFC, 과학수사부 같은 경우에는 법과학부라는 형태로 공소청으로 기능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증거의 수집·관리, 공판 과정에서의 제시 등을 위해서 법과학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범죄정보기획관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정보,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범죄정보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인 공소청 단위에서 전국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 대응을 위한 부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범죄 수사를 위해서 만든 조직 범죄정보기획관실이 공소를 위해서 다시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범죄라는 것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불성설 같고요.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원고,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자기가 감정을 하고 그걸 법정에 낸다? 그건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봐요. 그러면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거기에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그걸 법정에 제출한다? 그게 피고나 또는 제삼자가 쉽게 납득이 될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은 지금 과학수사부도 감정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서 감정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1차……

○이성윤 위원 감정의 무결성을 확보하려면 소속 부처를 옮겨야 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경찰에서 감정했던 것에 대해서 교차감정을 통해 정말 많은 범죄에 있어서 밝히지 못했던 사항들을 밝히고 유죄 선고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밝혔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원고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해 놓고 자기가 감정해서 법정에 낸다, 그것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아 온 게 왜 검찰 소속으로 NDFC가 있냐 이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더 이상……

○이성윤 위원 그 소속도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니까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증거물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그걸 왜 검찰이, 공소청에서 하나 그 말이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과수와 함께 법과학부가 과거 교차 감정과 검증을 통해서 기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성윤 위원 그것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차원에서는 공정한 객관적인 제3기관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주장을 하셔야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교차 검증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두면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범죄정보기획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게 나쁜 일에 연루되었던 적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교차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한 변화의 안을 좀 내시는 게, 또한 유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제되면서도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간략히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디지털증거가 각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NDFC에 있는 현장에 있어서의 포렌식 인력 등은 전부 다 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디지털증거, 특히 공소청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특사경, 기관들과의 지도·조언·협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집된 증거들을 공소청에서 받아서 분석하고 기소한 뒤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 디지털증거들의 무결성까지도 공소청의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법과학부의 디넷과 엔디파스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수사기관 간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협력 관계와 디지털증거를 제시하고 유죄를 받기 위한 여러 공소유지 과정에서 너무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잘 살펴 주기 전에 그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디넷 같은 경우에 넣어 놓은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면서 언제 거기서 무엇을 꺼내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를 웬만한 사람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자료가 그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분은 수사와 기소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기관이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의 역할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부작용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어디까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있었던 문제점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채로, 여러분의 주장을 잘 이해하면서도 걱정은 계속되어 있는 거지요.

이성운 위원님 말씀처럼 각기 다 보고를 드리고, 제가 먼저 보고 오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각기 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또 가지고 와야 해요. 그래야 이것을 판단하고 가르마도 타고 또 교차 검증이 필요하면 교차 검증을 위해서, 아니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또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라고 해서 차단하든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소상히 알리고 이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님,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차관님, 어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관련해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현직 검사 4명 기소한 것 보고받으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검 상황은 보고받지는 못하고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언론보도 정도만 확인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특검은 독립기관이어서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20년에 고발이 됐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고발된 사건이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4년 7월, 4년이 지난 이후에 수사를 무마하고 미루다가 황제 조사라고 해서 김건희가 지정하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찾아가서 김건희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조사가 우리 검찰 수사 역사상 없었던 경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노무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신분 시절에 검찰에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았습시다. 이 정도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라면 당연히 이것은 검찰과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 뭔가 커넥션, 네트워크가 있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모든 국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만 그런 자정작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내놔던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내용입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권오수를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 주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다른 주범과 연락한 증거가 없다, 통정매매 2회 거래도 구체적 증거 없다, 방조 적

용도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검찰의 그런 특혜 수사로 인해서 만들어 낸 조작된 혐의였음 처분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최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시세조종 인식했다, 20억 원 자금·계좌 제공했다, 수익 40% 배분 약정했다, 통정매매 있었다, 공모해서 공동정범 인정된다,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명확했다라고 보이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요. 검찰의 신뢰도를 많이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최근 특검이 발표 낸 사실과 기소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도 끝나기 전에 내부 메신저로 무죄판결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이것 엄청난 직권남용 아닙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검찰에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내기 한 달 전 작성된 비공식 답변서가 검찰에 먼저 접수됐고 비공식 답변서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고 최종 공식 답변서에는 빨간색 부분은 대부분 남아 있고 파란색 부분은 변경·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문서에 수정을 하면서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해 가면서 답변서를 검찰과 피의자가 상의해 가면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성했느냐? 지난번 1차 답변서를 냈더니 1차 답변서에서 김건희 측이 했던 답변이 수사 결과와 모순되고 다르고 유죄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답변서 초안을 받아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답변서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수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김동아 위원** 이게 검사가 범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법무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사과의 말씀 해 보시지요. 사과하실 의향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거두시고 많이 실망하셨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구성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공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소권이 수사권보다, 상하를 나눌 수는 없지만 더 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검찰의 사건 조작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여러 위법 수사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징계도 못 하고 있고 아직까지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특검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 이를 밝혀내야 됩니까? 이런 조작기소, 잘못된 기소,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밝혀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성호 장관님께서 검찰인권준중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조속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긴 한데 아까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좀 수정할 게 있으면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아니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경찰수사 따로 검찰수사 따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수사를 두 번 하는 이런 관행과 구조 속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뀐 만큼 최대한 협력해서 최대한 한 번의 수사에서 끝날 수 있도록 특히 영장청구 과정이나 영장집행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서면으로만 지휘하고 서면으로만, 문서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그럴 때 필요하면 현장도 내려가 보고 필요하면 영장청구 과정 이런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의를 하고 경찰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그런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협력해서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하고 교정본부장 그쪽에 가서 좀 앉아 계세요.

법무차관, 힘들지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도 많이 해 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도 많이 해 봤습니다.

장관이 두통이 나서 아파서 못 나왔으면 그걸 당당하게 설명하세요. 그 자리에서 잘못 답변을 하면 국가에 얼마나 큰 영향이 오는 것 잘 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오늘 차관이 답변을 잘해. 장관 물러나면 장관 되세요. 아니, 내가 청문회 하면서 진짜 도와줄게요. 아주 잘해요.

보세요. 저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가 버리고 얼마나 쉽게 국회의원 해요? 제가 금년에 팔십넷이예요. 5시간, 6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지요. 그래도 앉아 있잖아요. 장관도 국회만 없으면 해 먹을 만하고 국회의원도 선거만 없으면 해 먹을 만해요. 참고 합시다.

이번에 존경하는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5·18 정신적 피해자 보상 시효를 없애 버렸어요.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했던 말이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한 거예요.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다 얘기했어요. 정신적 피해자 보상을 LKB 법무법인에서 한 것은 많이 보상받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조그마한 변호사들은 아주 적게 보상을 받았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법무장관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다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신고를?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그 보상 시행령이든지 규칙이든지 잘 만들어 가지고 잘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구체적으로 그 법이 잘 시행되고 피해 입으신 분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을 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관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잘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박지원 위원 그리고 출입국관리본부장.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출입국관리본부장입니다.

○박지원 위원 목포사무소 승격해 준 것 진짜 감사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저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13명이 증원돼서 내년에 23명 정도, 25명 정도……

○박지원 위원 언제까지 다 되는 거예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하반기에 직제가 개정이 되면 빠르면 내년 2월 정도에 출범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본부장께서 약속했어요. 반드시 도서지방은…… 아, 장관이 약속했어요. 출장 처리를 하겠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지켜야 됩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예.

○박지원 위원 아주 감사합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현재도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상담과 외국인 등록과 사회통합 교육까지 같이 한꺼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웅진군, 그 섬을 다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목포사무소는 신안군이나 완도군이나 진도군이나 다 도서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나와서 목포까지 가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한 달에 일정한 날을 정해서 도서에 출장 서비스를 해라, 또 그 약속을 꼭 지켜 달라 이렇게 말 씀드립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 잘해야 차관 돼, 나중에. 알았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정본부장.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교정본부장 이흥연입니다.

○박지원 위원 교정본부장, 지금 현재 교도소·구치소에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얼마나 많이……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지금 저희 수용 정원이 5만 6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6만 3000명 이상이 지금 수용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빨리빨리 가석방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박지원 위원 가석방도 시키고……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과밀 수행하는 방안 중에서……

○박지원 위원 앞으로 마약이다, 성폭력이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증가할 것 아니에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교도시설 더 증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예,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꾸준히 하고 있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 수도권에다 하지 말고.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저희가 2030년까지 한 4300명 증원 계획이고요, 시설을 증축해서.

○박지원 위원 그런 시설을 해남교도소 제가 가 보니까 아주 좋아요. 거기를 좀 크게 증설해 가지고 몇천 명을 해남으로 보내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수도권에다 해 가지고 민원 생기고.

그런데 법무부 교정본부가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잘해요. 교도소·구치소 들어가고 나면 처음에는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경제발전을 하더라고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위원님께서 꼭……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비싼 것 하지 말고 진짜 싼 땅이 해남에 많으니까 해남교도소를 크게 증설하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흥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잘했어요.

법제처장님, 법제처장님께서 소위 개헌 문제, 연임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국민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지요? 그렇지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서면답변을 통해서 ‘현재의 대통령은 개헌을 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헌법 조문대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법제처장 조원철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그것은 작년도도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중요하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박지원 위원 바로 그거예요. 현행 헌법에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된다 된다 하고 소지 지르는데 그것 전부 없도록, 오해가 안 되도록 분명히 법제처에서 정리해 주세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물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적으로 볼 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했는데 임명권자는 대통령 아니에요?

○법제처장 조원철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과거 제가 해 봤어요. 제가 해 봤어, 해 봤어. 숙의해서 합의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법제처장 조원철 협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협의해서 조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대의 회한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박지원 위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법제처장 조원철 유례가 없던……

○박지원 위원 법에 그런 게 있어요?

○법제처장 조원철 법에 있다 없다가 떠나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공감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도 서울을 옮겨라 할 때 관습헌법에 의거해서 안 된다 했어요. 관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장 하면서 대법원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대법관, 이게 전부 감옥에 갈 일 아니에요. 그렇게 지켜 왔는데 왜 회대의 이상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는지 혹시 알아요?

○법제처장 조원철 저로서도 그 배경이나 속내는 알기 어렵습니다.

○박지원 위원 진짜 이것은 듣보잡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먼저 추천한 앞차가 빠져나가야 뒤차가 들어오는데 법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선택적 임명을 하고 선택적 대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되나요?

○법제처장 조원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청권하고 임명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제청권 행사에 있어서 협의가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제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맞아요.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합의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보내요.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서면으로 보냈다고 저렇게 박박 우기는데 저는 대법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누구예요, 그 사람?

○위원장 서영교 손봉기.

○박지원 위원 손봉기 이 사람은 안 되면 임명하지 말고 돌려보내고, 선택적으로 돌려 보내고 그리고 김성수 대법관후보자는 임명해서 국회로 보내라 하는 게 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법제처장 조원철 가능합니다.

○박지원 위원 가능하지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건의하세요.

○법제처장 조원철 제가 그렇게 건의할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법제처장이면 그런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지.

못 하시겠어요? 그것 제가 그렇게 건의하더라도 좀 전해 주세요.

○법제처장 조원철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달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박지원 위원 대법원을 마비시킬 수는 없잖아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추천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고, 되는 사람은 임명 해서 국회로 보내라 이거지요. 그게 옳은 것 아니에요?

○**법제처장 조원철** 대통령께서 만약에 특정 인사, 특정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그리고 손봉기 그 사람은 보내면 국회에서 부결되면 더 난리 나요.

꼭 그렇게 건의하세요.

○**법제처장 조원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22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러더라고 하는 말씀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손봉기는…… 빨리.

한번 드리세요, 마이크.

○**박지원 위원** 손봉기는 돌려보내고……

○**위원장 서영교** 다시 한번요.

○**박지원 위원** 손봉기는 법원으로 돌려보내고, 김성수는 국회로 보내라 이게 예요.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손봉기는 반려하고 김성수는 국회로 동의서 보내라, 그래서 임명 청문회 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서영교**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역시 위원장이 위원보다 훨씬 똑똑하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앞으로 공소청에 임명될 공소청……

○**김용민 위원**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현재 기준 마지막 검찰총장은 심우정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그 심우정이 내란범으로 어제 기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용민 위원**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했다, 중요임무종사자로. 그리고 당시 법무부장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돼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오늘 장관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나오신 차관님이라도 국민께, 아까도 사과말씀 한번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말씀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법무부인데요 법무부장관님께서, 전직 박성재 장관께서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로 인해 가지고 실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시다만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란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과거사를 바로잡고 계속해서 거듭나고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심우정에 대해서 사과를 왜 안 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지금 현재 법무부차관직에 있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 검찰은 법무부가 감독하는 기관 아니에요? 지휘·감독하는 기관 아닌가요, 법무부 외청이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또 하나 말씀……

○**김용민 위원** 그 외청의 총장이었던 심우정이 그것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데,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못 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기소 사실만 간단히 신문을 보고요, 사실 내용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유무죄를 인정하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기소가 됐으면 감독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라는 사과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도 아닌데, 사과말씀 한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참 답답합니다. 박성재는 사과하고 심우정은 사과 못 하고,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십시오. 그동안 검사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렇게 기소가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더니…… 옆에 있는 공수처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기소합니다. 10명을 기소했어요. 심우정 두 번 기소돼서 11명인데, 김상민 심우정 전무곤 이창수 최재훈 엄희준 김동희 김민구 서민석 최지은 이런 검사들이 싸그리 다 기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병산의 일각이에요, 병산의 일각.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나쁜 짓을 했고 그게 다 수면 아래 묻어 있고 자기들끼리 봐주면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관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못 합니까? 다시 한번 입장 묻겠습니다. 국민들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 못 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김건희……

○**김용민 위원** 못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김용민 위원** 제가 지금 유무죄를 물어봤느냐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 제가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김용민 위원** 차관님, 대한민국 마지막 검찰총장이 내란죄, 내란범으로 기소됐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냥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라고 깔끔하게 사과하셔야 된다고요. 왜 이걸 가지고 지금 저랑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전직 검찰총장께서 이와 같이 내란 중요임무중사 등으로 기소되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참 어렵네요.

제가 법원조직법 41조의2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인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지난번 1월 달에 대법관후보 4명 추천했을 때도 정성호 장관께서 들어가서 논의를 하셨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천했던 4명에 대해서 어제 법원행정처장은, 그저께지요.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 와서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됐다, 그래서 그 4명 추천을 다 무효로 돌리고 새로 추천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까지 다 돌렸고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자기가 사죄도 하고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후보자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장관님 입장에서는, 장관님이 안 나오셔서 대리로 물을 수밖에 없지만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제안이고 말이 안 되는 제안일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행태였을 것 같고, 법원이.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말씀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대법관이라고 하는 정말 국가의 주요한 직책에 있어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 등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렵습니다만 그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위원들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기껏 추천했는데 대법원이 그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서 추천위 다시 꾸려서 다시 추천하려고 했다, 이게 그 당시 해당 추천위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들에 있어 위원들께서도 전혀 상정하지, 생각하지 못한 일—그게 사실이라면—진행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제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지만 추천위원으로 들어갔던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1분 더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아까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법무부가 보낸다고 했는데 동백림 사건 지금 재심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윤이상 작곡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과거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국정원이지요. 사건을 조작했어요, 납치해 오고 고문해서. 그랬는데 지금 재심 진행 중인데 검찰이 여전히 의문이 없었다, 의문이 있었던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라라는 태도, 전향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에서도 내부 과거사 조사를 해서 납치와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해서 발표까지 했던 사안인데 여전히 검찰은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아까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으니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내용을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12만 건……

○김승원 위원 한 14만 건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14만 건. 그 정도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14만 건이 10월 2일부터 수사권이 공소청에 없다는 이유로 이것이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보내져 버리게 되면 제도 초반부터 굉장한 혼란이라든가 사건 적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건 중에서도 적절하게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혹시 필요한 것은 부칙에 의해서 12월 31일, 90일 연장할 수 있는, 연장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어쨌건 수사 대상이 되는 국민이건 혹은 수사가 필요한 피해자건 간에 혼란 없이 또 지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작업을 혹시 법무부에서 하고 계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대검찰청에서 이송할 사건들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떠한 시간 플랜에 따라서 사건들을 이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사건에 대해서 전부 경찰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공소청 개청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은 최대한 처리를 하고요. 이송해야 될 사건들은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은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소중지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사건을 제기해서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것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소문까지 있느냐 하면 제도 이게 형사사법 70년 만의 변경 아닙니까? 어쨌건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미제를 가지고 그냥 폭탄처럼 경찰로 내려보내서 초기에 혼란을 유도해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 이런 소문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들고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급적 12월 31일까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것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대부분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예, 차관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사건 중에 홈플러스와 관련돼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홈플러스는 이번 달 8월 7일 날 가오편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2만 여명의 직간접 고용자들, 그러니까 피고용인들, 협력업체 4600곳이 다시 회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매출이 한 200%,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회생법원에서 9월 4일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 홈플러스에 문제가 되고 있는 MBK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클 병주 김이라고 하는 김병주, 실질적인 오너 그리고 홈플러스와 관계된 것을 운영하고 지휘했던 김광일 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4명 모두 다 기각이 되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것이 올해 2월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올해 초였습니다.

○**김승원 위원** 올해 초였고요. 올해 2월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시 수사 의지를 불태우면서 담당 부서를 반부패2부에서 3부로 바꿨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부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보완수사, 추가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뭘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이것 지금 벌써 3·4·5·6·7·8,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언제 결론을 내리거나 언제 제대로 뭘 하실 겁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검찰에서도 인식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구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담당 부서를 변경해서 또한 면밀한 수사와……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런데 차관님.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을 하기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전단채라고 하잖아요. 4000억을 발행한 것 아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홈플러스가 재정이 어렵고 뻔히 이것 부도 처리 막으려고 회생절차 하

는 걸 알면서도 그 경영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국회에 와서 홈페이지에 대한 국정조사인가요, 우리들이 할 때 김병주 씨가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위증을 고발 결의해서 보냈는데 법에 의하면 검찰에서 2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은 검찰이 분명히 잘못하거나 태만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예전에 동양증권인가요, 거기서도 전단채 발행했다가 한번 오너가 징역 7년인가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금액이 4000억에도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800억인가 1000억 미만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런 선례도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회생 신청하기 전에, 부도가 나기 전에 수천억 원의 돈을 또 마이너스통장까지 한 800억 정도를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월 달에? 그것은 누가 봐도 사기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고 영장재청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에서 사실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의혹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부서 변경 이후에 여러 가지 변소 내용 등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요.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도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게 7월 달에 차례대로 과장급부터 해서 사장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옮긴 것은 2월 달인데 과장을 부른 그 수사는 7월 달부터 한 것이어서 저는 사실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월부터 새로 시작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말씀……

○**법무부차관 이진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여하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집중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시지요. 2분 더 드리시지요.

○**김승원 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계자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생계와 직결된 그런 피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난 추운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회생법원에서 또 검찰청 앞에서 계속 신속한 수사 촉구라든가 회생절차의 어떤 실질적인 결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만도 벌써 수사 개시한 지가 거의 1년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답이 없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MBK가 홈페이지를 자기 돈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LP들을 모집해서 남의 돈으로 다 인수하고 그 인수한 것을 갚으려고 홈페이지의 핵심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토지를 다 팔아 버리고. 그러면서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MBK가 1조…… 제 기억은 2000억인가 1조 몇천억 원을 관리수당, 무슨 수당으로 해서 보수로 다 받아간 것 아니겠

습니까? 그것이 홈플러스가 부실화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 부도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전단채라든가 마이너스통장까지 몽땅 다 써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거기 입점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상거래 채권자들이 다 지고 있는 것이고 투자한 국민연금도 아마 손실을 볼 예정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되고.

주요인력이라고 해서, 다음 한번 보여 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MBK 실소유자인 김병주라든가 회장인 김광일 씨가 주요인력으로 정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 그 정관에, 이 사람들이 위증이건 혹은 전단채사기 발행으로 인한 처벌이라든가 기소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MBK가 홈플러스의 부실화된 책임을 지고 수천억 원이라든가 1조 원의 돈을 토해낼 책임을 지는 그런 정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검찰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기소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김병주 씨, 김광일 씨가 약관,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받은 관리보수라든가 또 LP들로부터의 투자금을 다 토해내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홈플러스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입점업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수사권을 자꾸 뺏냐고 그 목소리만 높인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과도 반성도 없고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때에 진지한 노력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이것 못 드리겠다, 일단 받고 보자라고 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좀 검찰이 분발하고 지금이라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 1일 날 공수청으로 바뀌니까 우리 홈플러스 못 하겠다, 중수청으로 내려보거나 경찰 등으로 내려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진짜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을 통해 가지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띄워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이 내용 좀 한번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서면제청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 후보 사퇴 중용을 했습니다. 대법관후보가 4명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구성된 법적 조직입니다. 추천을 했고 4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 4명의 후보를 보통은 약 11일

이면 제청해서 대법관을 임명해 나갑니다. 대법관 1명이 다뤄야 될 사건이 4000여 건입니다, 1년에.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법관이 임명되어서 대법관이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했고 임명을 하려면 제청이 와야 돼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는데 제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을, 제청을 안 해요. 그래서 209일이 왔어요. 이것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저도 언론 확인한 정도고요. 구체적인 사건은 저희 처에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확인했을 때 조희대와 관련한 고발장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이 이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결처분한 것도 있고 상당히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파악하기로는 23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귀연 관련해서도 고소·고발되었는데 수사는 끝났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지금 사실관계는 거의 종결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저희들 막바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위원장 서영교** 그게 인사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신속하게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신속하면 되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막바지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이 이 4명의 대법관후보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 4명이 추천되었는데 이 4명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모두 한꺼번에 사퇴를 하시는 것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 꾸려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현재 사건이 아마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좀 곤란하고.....

○**위원장 서영교** 왜 즉답을 못 합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것은 직권남용이고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시니까 또 특별히 엄정하게 그 사건 절차 진행되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관후보들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었어요. 4명이 추천이 되었어요.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일명 노경필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대법관후보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하면 다시 추천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경찰이 이 사람을 수사하고 있어요.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수사받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해서 다른 경찰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이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수사받고 있는지 아니면 압수수색당했는지 알려 주면 그것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여러 가지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김성태에게 지금 구속영장이 들어온다,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온 다라고 알려 준 수사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 처벌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알려 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화를 해서 사퇴를 촉구했어요. 하 면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전화를 하면 되는 사람 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후보가 추천됐어요. 이 사람들 독자적인 후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화를 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어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문제점 잘 알겠고 저희들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 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무부차관, 전화를 해서 대법관후보자들에게 사퇴 요구를 했어요. 범 죄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통상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사퇴를 종용…… 연락을 하 셧던 이유와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연락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자고 연 락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적으로 꾸려져서 추천됐어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연락을 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자고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차로 구성했던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하 지 않으셨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범죄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이시고 범죄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기관 아니에요, 공수처장?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반인 범죄는 이게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는 범죄다라 고 얘기를 못 하지요?

대한민국의 대법관 자리예요. 그래서 법으로 후보를 추천하라고 되어 있는 자리예요.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다시 꾸리겠다, 사퇴를 이야기했어요. 그래 놓고 전화를 한 이유는 뭘까요? 법무부차관께 물어볼게요. 전화를 한 이유는 뭘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냥 상식으로. 전화를 해서 ‘대법관으로 추천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대법관으로 추천돼 있는데, 제청해야 될 차례인데. 다시 후보추천 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대법관후보를 사퇴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사퇴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라고 한다고 사퇴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 됩니까?

수사기관의 기관장들께서, 법무부차관께서 이것은 범죄다라고 이야기해야지요. 범죄예요. 그것도 대법관이, 그것도 대법원장이.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면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그랬다면 더 큰 범죄이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질질 끌겠습니까,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더 엄정하게 그 사건 처리되도록 제가 독려하고 또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런 걸 질질 끌고 그대로 놔두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겁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돼요’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차관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법무부장관이 실형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그게 뭘니까, 이 대한민국에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했던 사람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되었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게 뭘니까, 이게? 도이치 모터스 그때 주가조작이라고 이야기해야 그때로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끝내지 못하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수사한답시고 다 봐줘 가지고……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줄쳐 가지고 봐줬다는 것? 이것을 그때 끝내지 않고 놔두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거고 끝내는 검사의 능력을 앞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봐주시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제가 아까 공수처장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진짜 검사 맞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공수처장님. 무엇이 가장 잘한 수사 중의 하나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공수처는 제한된 인력으로 내란수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 서영교 내란수사, 윤석열 체포할 때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 말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다음에 지금 또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 있어서 1건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청의 고위 간부에 대해서 알선수뢰 등으로 기소를 해서 지금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검사와 관련한 것은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또……

○위원장 서영교 검사가 무섭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검사의 직무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그 질책을……

○위원장 서영교 수도 없이 많이 고발 들어왔을 텐데 검사와 관련한 것을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책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우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동안 줄줄이 봐줬더니 진행된 일이 바로 끝내는 노경필이라고 하는 대법관 출신의—대법관이지요—법원행정처장이 한 일이 바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을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한 겁니다. 그래 놓고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또 오리발을 내딛니다.

구중궁궐 속에서, 과연 법원행정처장이 혼자 했던 일일까요? 그것을 대법원장이 당연히 알고 당연히 공유해서…… 대법원장 허락 없이 그런 전화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장의 허락이 없이 했다면 그것도 직권남용이고 대법원장이 같이 공유했다면 둘이 같이 공범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또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높은 자리는, 고위직은 그래서 더 철저히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자기 검열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 계시지만 7분과 5분 보충질의를 저희가 합의했고요. 결산에 대한 서면질의는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차관님 오전에 얘기한 것 좀 확인해 보셨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제한된 시간 내에서 급하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가맹점주들이 사업 운영자 여러 명과 그 당시 모델로 활동했던 양정원 씨를 함께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기죄 등으로요.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법무부차관 이진수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KICS 등 시스템에는 피의자로 등재를 해서 피의자 목록에……

○김기표 위원 처음에 피의자로 했다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양정원 씨를

참고인으로 먼저 조사를 한 뒤에……

○**김기표 위원** 피의자인데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다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피의자인데 참고인으로 조사한 다음에 팀원인 다른 경찰관에게 지시를 해서 신분을 참고인으로 정정하는 수사지휘서, 수사보고서를 각각 작성한 후에 KICS 시스템에서 양정원을 피의자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산에 사라지게 한 경위로 파악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하고 맞네요.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거지요. 여러 명인 사건이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피고소인은 여러 명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중에 양정원이라는 사람을 피의자에서 제외해서 참고인을 했다는 거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아까 어떤 사건이든지 전체 송치를 해 가지고 90일 내에 검사가 재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걸려진 것은 아니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 형식적인 것 맞춰만 봐도, 고소장하고 그다음에 결정문 같은 것만 좀 봐도 1명이 지금 빠져 있고 ‘왜 빠졌지?’ 이렇게 기록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검찰에서 안 걸려진 것이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발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송치사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록만 보고 검사가 다 미비한 점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김기표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은 참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좀……

○**김기표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0일간 재수사할 수 있는 것이 지나치게…… 사실 무슨 전건송치 얘기도 되고 그런 것이, 전건송치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 전체적인 무슨 권한을 준다는 게 아니지요. 전체 사건을 검찰에 보내서 다시 한번 스크린하라 이런 취지이고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다리지 않고도 검사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그 사건에 있어서는 이른바 전건송치가 됐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모두 송치하라고 됐든 용어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이른바 기존의 검사들한테 모든 사건이 가던 것을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게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조항 아닙니까? 1차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수사기록을 불송치하더라도 기록을 다 넘겨서 90일 동안 검사가 보라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의 사건은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90일이 지나가 버리면 사건이 시쳇말로 그냥 흔히 쓰면 사건 떨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사건 뜬다는 표현. 그러니까 90일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지나면 내 사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아무 부담

이 없지 않습니까? 90일 동안 그냥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실무적인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좀 염두에 두어서 봐야 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빠뜨리는 것 자체는 좀 걸러지는 시스템을 검찰 내에서, 이 제도하에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것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옛날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평정도 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도하는 방법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이 90일 검토하는 그 사건을,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건이 아니니까 항고 위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에서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제가 또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보도자료가 마치 그래서 ‘이의신청할 권리조차 박탈한 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이 저는 좀 유감입니다. 사실은 피고소인 여러 명이기 때문에 고소인은 가사 양정원이 참고인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송치든 불송치든 결정이 나면, 요새는 하여튼 송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보도자료 썼다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예 고소인이 아무 터치도 못하게끔 됐다는 취지로 읽혀요, 보도자료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그러니까 검사가 이것까지 발견을 했으면 더 조기에 시정됐겠다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경위를 보시면 담당 경찰관이 여러 가지 립살롱 접대와 금품 수수를 한 뒤에 피의자인 사람을 참고인으로 의도적으로 시스템에서 신분까지 변경을 하고 그것을—여러 명의 피고소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그중의 한 명이 섞어서 보낸 기록이었기 때문에 검사도 정말 면밀하게 보지 않고서는 좀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점에서 분명한 피고소인,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킨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표 위원 1분만 주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예, 2분 더 드리세요.

○김기표 위원 일단 이 사건은 수사를 잘한 사건입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매우 잘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경찰이 부패한 사건을 다른 수사하다가, 추가적 사건 하다가 발견해서 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굉장히 잘못된 사건이고 부패한 사건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사건이 지금 현재 전건송치는 안 된 상황에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그렇게 송치되어 있는 사건에서 적어도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고소장에 피소인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피의자로 입건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형사소송법도 정면으로 위배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기록을 차분

히 읽어 보지 않고도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한테만 스크린을 시켜도 이것은 충분히 스크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사 지휘하는 그 조항을 그냥 ‘아이고, 이것 수사종결권도 다 뺏기고 전건 송치도 안 되고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조항’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검찰에서 앞으로 공수청으로 새로 탈바꿈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조항이 적어도 이렇게 이의신청권을 잠탈한다든지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스크린하는 제도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법무부든 검찰이든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존에 저희들도 90일간 보고 반환하는 제도와 결론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재수사 요청의 비율이 약 2% 남짓밖에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지금 불송치 결정 처분의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고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서와 과를 신설하는 등 그러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도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오동운 처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 처장님 임명이 언제 되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2024년 5월입니다.

○김동아 위원 5월이지요? 임명되시고 지금 2년이 넘으셨는데 공수처가 고발한, 기소한 사건 몇 건입니까? 작년에 1건, 올해 1건, 단 2건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동아 위원 지금 300억 가까운 예산을 써 가면서 지금 검사 한 25명 정도 되고 수사관 40명 되고 행정직원 20명 되고 한 100명 남짓한 이 조직에서 작년에 1건 기소했고 올해 1건 기소했습니다. 제대로 지금 기관이 작동하는 겁니까? 이것 그냥 세금 먹는, 그냥 세금 먹으면서 월급 받아 가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또 활발하게 수사 진행 중인 것이 있고 또 성과가 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수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처장님 오기 전에 그래도 보면 8건, 처장님 2024년 5월에 왔다가 5월 전에 보면 한 3건, 11건 기소가 됐는데 처장님 오고 나서 지금 3년 동안, 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지금 2건, 2건 기소됐습니다. 1건 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불법비상계엄에 상당히 인력을 전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또 다른 건은 하지 못한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수사를 하는데 1년이 걸리고 몇십 개월이 걸리고 그래요? 아니, 증거 찾아 가지고 증거 조사하고 피의자·혐의자 불러 가지고 조사하고 공소장 써서 제출하면 되지 기본적인 기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건이 뭘니까 1건이, 2026년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 범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고……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빨리 얘기해야지 지금 위원장실도 한 번도 안 찾아 뵈었다고 그리고 최근에 찾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라도 법 개정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호소한 적 없잖아요, 저희 의원실이라도 와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봅니다. 범죄가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명해졌습니까? 1년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1건밖에 없는 그런 투명하고 깨끗한 우리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좋은 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좀 더 위원님들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법 개정 활동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범죄자들이 웃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최근에 포렌식 장비 입찰 비위 사건으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징계 내려왔지요? 보니까 공수처가 먼저 적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저희들이 감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 먼저 발견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의혹의 요지를 보면 포렌식 장비 납품업체가 국외출장 비용 일부를 부담했고 동일 출장에 관해서 기관출장비도 받았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정말 해이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오기 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엄정하게 감찰을 지시해 가지고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감찰 지시 왜 내렸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여러 가지 몇 회간 해서 반복된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인사 변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행위입니다.

○**김동아 위원** 내부고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단서가, 특별한 단서가 있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후임 인사조치 이후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감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김동아 위원** 공수처장님, 지금 채 해병 특검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동아 위원** 지금 감찰을 받은 핵심인사가 처장님에 대해서 특검에 나가서 좀 불리한 진술하고 재판에 나가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는 그런 진술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김동아 위원** 알지 못하다니요? 지금 언론에도 났고 공수처 내부에 소문도 파다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항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특검에 그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기 전에 감찰을 시작한 겁니까, 특검에 나가서 진술한 이후에 감찰을 진행한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특검하고는 상관없이 그 훨씬 전에 새로운 수사과장의 보임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러한 비위입니다.

○**김동아 위원** 처장님, 그러면 그전에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물론입니다.

○**김동아 위원** 확실한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래서 특검에서의 진술하고 이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관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시점이 먼저라는 거지요? 감찰을 먼저 진행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당연합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감찰을 진행하게 된 단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정황 그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새로운 수사과장이 보임을 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점검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런 사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동아 위원**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건,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직원이랑 징계받은 직원들 해서 다 포렌식 담당 직원들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동아 위원** 지금 포렌식 담당 직원들 충원됐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나름대로 또 검찰에 있던 포렌식 직원도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큰 업무 장애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충원이 됐습니까? 지금 포렌식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일부 충원되어서 3명의 직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새로 충원을 했습니까, 3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동아 위원** 지금 공수처가 보면 자체적인 감사기능이 없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인권감찰관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김동아 위원** 이 건도 인권감찰관이, 그분이 해서 적발한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밝혀졌고 그 이후에……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거냐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분이 적발하셨나 물었으면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잖아

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 인권감찰관이 적발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적발이라기보다는 수사과에서 여러 가지 시작된 일을 제보받고 또 인권감찰관이 후속조치를 했고 여러 가지 처분하는 데 나머지 일들을 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공수처가 총체적인 부실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감찰기능도 없고 제대로 된 수사도 지금 진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하고 있고 지금 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비위에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지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기우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그 이후에 더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났고 또 직원들이 더 긴장하면서 그 감찰 이후에 더 엄정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공수처장님,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공수처 출범 이래 지금까지 1심 유죄라도 난 사건이 6건? 5건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좀 그래도 국민들 관심을 끌 만했던 사건이 있다고 본다면 유병호 감사위원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거 특검이 구속 기소한 것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저희들은 감사원 관련해 가지고는 공소 제기 요구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균택 위원 특검이 했어요. 3년간 질질 끌었던 사건이고 결국은 구속 기소는 특검이 했다 이 말이지요. 정말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를 저는 참 의문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건들 수사하고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각 부에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사건 등 활발하게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항상 활발하게 한다, 곧 처리할 거다라고 했지만 별로 보여 준 적은 없고 국민들에게 답답증만 안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있는 인원과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늦추고 성과를 보여 주지는 못했으면서도 항상 제도 탓, 인력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인 법관들 수사대상자가 누구누구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이 판사, 현직 판사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직전

에 기소를 했고요, 지금 공판 진행 중입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현재 뭐, 뭐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박균택 위원 판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직전에 뇌물 기소한 사건……

○박균택 위원 지금 판사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 뭐가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여러 가지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사건, 여러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조희대, 지귀연, 그렇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도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공수처장님 기소가 언제 됐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균택 위원 기소된 사건이 있지요,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균택 위원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몇 회 기일이 진행되었고 저희들은 변론분리되어 가지고 한 두세 번은 또 참석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균택 위원 공수처장님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바람에 법원 눈치를 보느라고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법관들 사건 그 진행을 못 하게끔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리더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는 그런 부분 지금 전혀 관계없이 업무 수행하고 있고 제 기소된 사건은 업무에 전혀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저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헛된 것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업무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사실은 공수처가 중수청 출범함과 동시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처럼 공수처의 활동을 좀 더 보장해 주고 더 기대를 갖고 좀 더 기다려 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약이나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잘 못 느낍니다.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과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더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국내여비 집행률이 25년도에는 52%밖에 안 되고 포상금 집행 실적은 한 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이럴 리가 없는 것이겠지요. 예산 집행 현황만 보더라도 저는 공수처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2025년도에 저희들 인력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낮은 것은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임명이 좀 늦어지면서 우리가 검사가 25명밖에 안 되는데 3명 검사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 아니, 있는 인원도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아무튼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법무부차관님, 일단은 과수부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법무부 부분, 대검 과수부, NDFC.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NDFC 조직이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관님 보시면 저 중에서 그러니까 대검, 검찰 입장은 디지털수사과하고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넘기고 법과학분석과하고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남기겠다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저희가 생각한……

○박은정 위원 입장이 그러신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과 2개를 이전하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디지털수사과 안에서 보면 현장……

○박은정 위원 그중에서도 또 일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일부이고 사이버범죄수사과 중에서도……

○박은정 위원 일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렇게 됩니다.

○박은정 위원 그다음에 법과학분석과하고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그대로 또 두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NDFC를 그대로 그냥 공소청에 두겠다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맞아요. 중요한데 이게 수사하지 않는 대검, 검찰에, 공소청에 두는 것이 맞는가……

국과수 좀 올려 주시겠어요?

지금 국과수, 이름도 비슷해요. NDFC는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이고 국과수는 National Forensic Service이고.

지금 국과수 조직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법의학부, 법과학부. 저게 NDFC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 조직과 기능, 역할이 일치하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의학부는 NDFC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박은정 위원 그렇긴 한데 법의학부하고 법과학부에서 일단 지금 NDFC에서 하는 법과학분석이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 하는 업무랑 비슷하게 대부분, 왜냐하면 제가 국과수 보고를 받았거든요. 국과수 관계자들하고 제가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NDFC는 국과수하고 합쳐서 독립된 기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

금 NFS, 국과수가 행안부 산하이긴 하지만 이게 수사에서 조금 더 독립해서, 감정이라든가 DNA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독립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국과수가 행안부이긴 한데, NDFC도 대검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재명 조폭 뇌물 편지 사건 문서 감정한 것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감정 결과에 대해서 그때 그 문서 감정한, 종사했던 연구관이 막 반발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식으로 수사에 대해서 조작하고, 조작 논란도 있고 이랬던 NDFC, 그러니까 이게 수사와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사와.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공소청이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디지털캐비닛에 있는, 디넷 이 부분에 실제로 과거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그 당시에 기자들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한 그 자료, 이것이 불법적으로 통째로 또 NDFC에서 보관했던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의 조작기소, 증거 조작 이런 논란이 있었던 곳이 NDFC예요.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이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나중에 수사권을 복원하려는 시도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국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김승원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저것을 국과수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공소 유지 단계, 재판 진행 단계에서 그 기관에, 국과수에다가 의뢰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소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공소청이 꼭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NDFC에 대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은정 위원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2분 더 드리십시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오늘 속보로 김옥숙 전 대통령 부인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범죄사실이 뭔가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수익은닉……

○박은정 위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데, 그러면 노태우 비자금에 불법 비자금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은정 위원 SK 최태원 그다음에 노소영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904억 메모가 드러나 가지고 그게 불법 비자금이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그러면 그 불법 비자금 중에서 300억이 지금 SK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서로 공방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300억이 SK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기여금으로 봐서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은 된 것 같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게 노소영…… 5·18기념재단에서 김옥숙, 노소영 그다음에 노재현 등등을 고발해 가지고 피고발인인데, 그러면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에 노소영 관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피고발인이기는 하거든요. 피고발인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노소영 관장님이요?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압수수색 보도를 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사건 개요와 피의자 범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고발된 게 1년 1개월 지났는데…… 경찰이 사건은폐한다고 그렇게 검찰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고발된 지 1년 1개월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건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1년 동안 뭐 했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범죄사실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면 빠르게 수사를 해 가지고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수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시점에서 수사에 나서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범죄사실이 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오래 전 일이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라든지 추적 그다음에 최소한의 범죄의 소명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정도로, 지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파악을 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인데요.

○박은정 위원 1년 동안이나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사에 나서 가지고, 그러면 이 수사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904억 메모의 존재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발견됐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 300억 원이 SK로 넘어갔다는, 이 불법 비자금입니다. 그러면 그때 수사를 제대로 빨리 하든지, 그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 고발이 됐단 말이지요. 고발이 됐으면 빨리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1년이나 지나서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부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과수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과수부를, NDFC를 국과수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국과수에서도 범유전자과가 있고 지금 NDFC에도 DNA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같은 경우에 경찰의 1차 증거물 등에 대해서 DNA 감정을 합니다만 그 후에 NDFC에서 2차 감정을 통해서 성범죄라든지 범인을 특정한다든지, 2차적인 추가 감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중대한 과거의 성범죄 그다음에 강력범죄들을 밝혀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국과수와 통합해서 독립된 기관 혹은 감정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

○**김승원 위원** 시간 더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영교** 예, 1분 더 드리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관으로서 더 객관적인 감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박은정 위원** 객관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지금 저 NDFC에서 그동안 문서 감정이 저 모양, 이재명 사건에서 저 모양으로 나왔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자들의 정보가 통째로 D-NET에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은.....

○**박은정 위원** 그 조작·불법 수사의 온상이었던 NDFC, 문제가 됐던 NDFC를 공소청이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히 국과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증거 관련된 조직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고 정말 핵심적인 증거들이 대부분 디지털 증거로 수집되는데 그것이 1차 수사기관에서 수집되어서 보관·관리되어서 공소청으로 송부되고 그것이 다시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되어야 되는 시스템을 NDFC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결성을 입증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다면 현실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서 무슨 캐비닛이 있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증거자료를 꺼내는 듯한 오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했던 것이고

별건에서 다시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그래서 그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위법 수사, 위법 증거라는 판단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폐기됐어야 될 증거가 디지털 캐비닛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발각돼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판단 났던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박은정 위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됐던 것이 NDFC입니다.

그래서 국과수와 통합해서 국과수와 통합된 조직에서 제대로 문서 감정도 하고 DNA 감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안 바뀌시고 강제로, 어쩌면 그렇게 바뀌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핸드폰을 압수해서 가져가면 며칠 있다가 돌려주니까, 보통?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미징을 뜨고 나서, 요즘 같으면 이미징을 뜨고 난 뒤에, 선별 작업을 거친 뒤에 바로 반환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핸드폰 뺏긴 사람은 수개월 동안 핸드폰 없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러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처럼 이미징으로 다 떼 놓고 그리고 선별하고 나면 이미징 뜬 것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삭제를 알려 주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만 보관하고 있고요, 그것은 담당 검사건 수사 담당자건 영장 등 권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은 무결성 확인을 위해서, 법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무결성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미징 뜬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무결성 그건 또 누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속에서 언제 꺼낼지 모른다, 그리고 꺼내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

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려면 계속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필요한데 진짜 범죄자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데, 이렇게 되어야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의가 안 된다는 말인 거지요. 뭔가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 보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지금은 온 국민들에게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수 있는 그 신뢰를 확보하고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첨단화된 형태 속에서 그 내용들을 더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저희가 갖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부분을 상호 협력하면서 또한 상호 견제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차관님, 제가 질의를 이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NDFC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면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시값을 산출해 내고 하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밀봉하고 그것을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시값 비교해서 무결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그러면 해시값을 생성해 내는 이 과정까지가 증거 수집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대검이 증거 수집할 수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김용민 위원 공소청이 증거 수집하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앞으로 그런 직접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도 없고요.

○김용민 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수사관이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수사관은 앞으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공무직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김용민 위원 그런데 증거잖아요, 그게 다. 지금 증거 수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관님도.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증거 수집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1차적인 증거 수집이 될 것이고요, 그 자료들을…… 결국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디지털 증거도 송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들을 받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또……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이미 해시값 다 생성했어요. 경찰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했

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청에서는, 대검찰청에서는 해시값을 새로 생성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김용민 위원 해시값 새로 생성하면 이미 무결성이 깨져 버리는 건데, 증거가 훼손되어 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첫 단계에서 경찰이, 그러면 지금 상태라면 경찰이 압수수색하면 압수수색한 것을 해시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가서 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대검에 있을 이유가 더 없는 거고요.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능은 아무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그 기능을 없애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공소청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증거 수집도 하지 말라, 그러니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공소청에 있을 게 아니라 독립해서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기능을 없애자는 게 아니니까 조직을 어디에다 둘 거냐의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이제 공소청 출범이 한 40여 일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공소청 검사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소청 검사 수요?

○김용민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중수청 전직에 대한 희망을……

○김용민 위원 중수청이 몇 명으로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희망을 어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김용민 위원 차관님, 제 질문은 그거랑 상관없이, 몇 명이 갖는지와 상관없이 공소청은 몇 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수보다 많이 중수청으로 갔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안 갔으면 충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상관없는 거고 법무부가 봤을 때 공소청의 검사는 몇 명 정도를 둘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전직과 관련된 일들을 집중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에 한번 산정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용민 위원 그러면 다음번 회의 때는 보고하셔야 됩니다. 다음번 회의 때는 그 숫자를 좀 보고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판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최소 4~5일을 공판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또한 지금 검사의 수사기능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건들이 전부 검찰청에서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다시 내려간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의 업무 프로세스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김용민 위원** 제가 지금 검사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검사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수사요구하면서 사건 관리를 이제 검사가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 단계에서 협력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공판을 검사가 더 철저하게, 지금 한 명이 4~5일 공판 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얼마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수사 잘했는데 공판에서 부실하게 처리되니까 피해자들이 재판만 들어갔다 오면 ‘재판을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황당해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공판검사의 업무 부담을 많이 줄여서 더 충실하게 공판중심주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하면 더 늘리자라는 것에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형사사법시스템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추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수사관은 이제 수사관을 못 하니까 그 직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공소청 소속의 공무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공소청 소속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직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이제 법사위에서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출범 4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직제에 대한, 아직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직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않았으니까 명확하게 확실하게는 말씀 못 하시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이런 정도의 직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빨리 말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지금 공소청 직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청이 되게 되면 영장 검토 등 사법 통제와 수사 협력, 그다음에 형사부 검사들이 정말 많은 업무량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송치사건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공소 유지, 공판 검사들의 증원과 확대 이게 다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그것을 같이 잘 만들어 가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필요하면 증원도 하자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증원이긴요한 상황입니다.

○**김용민 위원** 저는 증원하자는 입장이에요. 필요하면 더 많이 두자, 검사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입장이 좀 달라지신 겁니까?

○**김용민 위원** 아닙니다. 원래 필요하면 많이 주자, 수사관은 줄이고 검사는 늘려서 공판 관여와 기소 업무를 더 철저하게 하게 만들자, 사건 수를 줄여 줘야 돼요. 너무 많이 하니까 사건이 이상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지금 반대편 좌석을 보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다 상임위원장을 이탈한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오기를 촉구합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저도 전화를 했는데……

아니, 예전에 국민의힘 위원들도 2021년도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당시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사안 갖고도 대법원장 나오라고 했던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헌법기관 사이에서,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된 후보자들의 사표를 종용했다고 하는 의혹까지 번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저희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야지요.

국회법 129조에 따른 것인데 정당한 절차법에 따른 행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떠난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 과거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법사위 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 8일 날 저희 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에서 위증 등이 확인된 검사 등 8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적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승원 위원** 5월 8일입니다. 지금 벌써 8월 21일이니까 거의 100일 가까이 되는데 법에 의하면 2개월 이내에 늦어도 4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수사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2개월 안에 안 끝난 것……

○**김승원 위원** 처장님,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보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안 끝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하는 신청을 또 국회에 하고 그랬습니다.

○**김승원 위원** 저희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한 김만배·정민용 관련 국정조사 고발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8월 19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국회의장께 수사 결과 보고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100일이 되도록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강백신 등 검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좀……

○**김승원 위원** 일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자료 요청하고 여러 가지……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있었냐고요. 일단 수사는 압수수색부터 시작 이 돼야 자백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승원 위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지금 위증사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또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이것은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일반 민간인이 고발장 낸 것과 국회에서 국정조사 중에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건에 대해서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한 것이고 법에서도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놓으 라고 한 건데 왜 이것에 대해서 100일 동안 압수수색이 전무하는 등의 수사 태만행위가 있었느냐 그것을 저희가 질책하는 거고요.

지금 길어도 4개월인데 그러면 20일 정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20일 동안 뭐 할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국회 조작기소특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강백신 검사 관련해서 참고인조사 등을 중심으로 나름 굉장히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진행된 부분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 또 성과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성과가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김승원 위원**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은 기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플랜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지금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서해……

○**김승원 위원**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증언감정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승원 위원** 그러면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고 그러면 연장해서 4개월까지 할 수 있다면 이제 20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수사를 종결할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법을 따르지를 않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좀 더 그 부분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서해 해경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

○**김승원 위원** 아니, 경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래서……

○**김승원 위원** 지금 검사 7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압수수색도 전

무하고……

○위원장 서영교 3분 더 드리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래서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모든 사건을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서해 해경 관련해 가지고는 압수수색하고 또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작특위 관련해서는 그 부분 사건을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이고, 좀 답답하네요.

다음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범정에 대해서 공소청에는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범정의 전신이 뭐였지요?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승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요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예컨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 그다음에 과거 판결 또 물의 야기한 법관 리스트 또 관련 내용에 대한 법관들의 세평 등등을 다 기록해 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승원 위원 거의 뭐 민간인 사찰에 준하는 그런 일들을 범정의 전신인 기관이 해왔는데 이것 공소청으로 거듭나는 마당에 범정은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과거에 범정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 말씀하신 사법부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소청이 수사는 못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건들 그다음에 갈수록 정말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범죄에 대해서, 각 분야 범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예컨대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보면, 예컨대 다단계 사건 등에 있어서도 각 한 건 한 건 송치된 것을 보면 그게 단건으로 처리될 수 있겠지만 전국에 있는 사건들을 모아서 보면 그 건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컨대 압수수색영장을 검토할 때, 청구 건을 검토할 때 그런 사정을 본다든가 아니면 기소 여부, 송치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모아지면 팬찰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수사·기소 여부라든가 그런 데 판단의 자료로 쓰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범정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제공된 정보 갖고 검사들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시장 보면 저 사람은 누구한테 뇌물 받아먹었다라든가 또 내연의 누가 있다라든가 이런 시각을 갖고 보면서……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1분 더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정치인이라든가 행정가들이라든가 기업체들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 또 수집된 풍문만 갖고 예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갖고 일단 수사를 시작해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옛날에 있어 왔고 그래서 시장을 수사한다든가 정치인들을 때려잡을 때 그런 정보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차관님도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정보 혹은 편견에 의한 아니면 상대방의 모략에 의한 정보들이 공소청으로 안 들어가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라든가 그때라든가 오염되지 않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 그것은 확실히 끌어 낼 수 있다는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정보, 과거에 잘못되었던 정보와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되어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소청이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약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마약범죄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신규 마약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기능이 없게 된다면 정말로 범죄 대응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그냥 조직적이거나 광역적인 범죄에 대해서 송치된 기록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를……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모으는 것은 상관이, 저는 그것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와 같은……

○김승원 위원 그것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한 정보와 또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 등에 대해서 그런 범죄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질문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우려했던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께 확신을 줄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지금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제도 설계 관련…… 그러니까 지금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개별적인, 특정 개인에 대한 비리정보라든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에서는 탈피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치사건, 즉 받은 사건에 대한 기준으로 각 분야에 대한 전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록 검토와 공소제기 그다음에 공소유지 그다음에 형 집행 과정에서 대응해야 되는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부서가 반드시 필요해야…… 지금 생길 수 있는 공백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런데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영장을 검토하는 검사가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으니 여기도 한번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 쪽에도 수사를 넓혀야 된다고 의견을 주거나 지휘는 아니지만 그런 지도를 했을 때 그렇다면 검찰이 가진 범죄정보 가지고 수사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거나 틀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력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운영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이 온전히 다 경찰이라는 기관에 집중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들이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려하시듯이 다른 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사의 주체가 된 다른 기관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간 사찰이 국정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검찰에서도 범죄정보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세 군데에서 하니까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차단하고 일단 한 군데에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든 컨트롤하든 이렇게 단일화를, 일원화를 시킨 건데 물론 그 기관도 믿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견제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관리 기능을 다시 또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에 다 주게 되면 옛날처럼 똑같이 민간인 사찰로 확대되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인 것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확실히 변화된 태도와 자세로 이 범죄 대응 정책부서를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저하고도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사권이 없는 게 맞네요, 그렇게 할 일이 많다면. 그렇잖아요. 더 전문적으로 크로스체크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고 더 자부심 갖고 더 자존심 갖고 명예롭게 검사들이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제가 법무부차관님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중수청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천팔백……

○**법무부차관 이진수** 2800여 명입니다.

- 박지원 위원 되지요. 어제 보도에 의하면 검사·수사관 몇 명이 지원했어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237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중에 검사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정확한 인원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100여 명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그 이후에 오늘 보도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박지원 위원 거기에 다 충원이 되나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지명한 검찰청 구성원 중에 중수청에서 선발해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도 말씀드렸다는, 질문하신 것으로 하는데 공소청 정원은 몇 명이에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현재는 검찰 정원이 1만여 명인데요, 지금 그중에 수사관 인력을 중수청으로 몇 명을 이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10월 2일 날 공소청·중수청 다 발족되는 것 아니에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 박지원 위원 출범하는 것 아니에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8월 말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인원이 그렇게 돼 가지고 준비가 게을리되고 있다 그러면 법무부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이체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검찰의 기능들을 상당히 이어받아서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공소청 개청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중수청은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중수청은 지금 새로운 조직 설계로……
- 박지원 위원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 법무부차관 이진수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사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 박지원 위원 행안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법무부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찰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 결과 이와 같은 인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그것 잘하세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서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인력들이 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수행해야 될 일들을 지금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국민이나 국회에서 염려하지 않도록 잘 협력해서 출범시켜야 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가 더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제 보충질의도 끝났습니다.

제가 잠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중 사건입니다. 최영중은 국민의힘 시의원입니다, 법무부차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최영중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통신내역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걸 기각도 시키고 거부도 했던 게 검사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잘못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의 결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서 그 검사들은 바로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통신내역영장이 허술했다, 별건이었다, 구속영장은 내용이 없었다, 그거 아마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건 알고 있지요? 검사들이 그따위로 언론플레이하면 이 검사들 잘못된 것이고, 감찰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착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든지……

○**위원장 서영교** 아니, 우선 통신내역영장이…… 최영중이 얼마나 중요한 범죄자인데, 만 12세 아동 성착취범인데 통신내역영장을 기각한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예요? 그런 거 왜 감찰을 안 해요? 지금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예요? ‘유착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시다’라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검토 과정 등에 대해서 대검의 지금 지휘부서에서 진상 확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진상 확인은 척 하면 나오는 진상 확인인데 그 영장을 기각시키고 구속영장을 거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거짓말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왜 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남부지검장을 하던 사람이 거기 당협위원장 김진모였고 이쪽에 청주지검의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대로 봤습니까? 아무리 해도 만 12세짜리 아동 성착취범을 검찰이 도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도와서도 안 되고, 더욱더. 그런데 그랬던 것은 ‘보니까 없어요’라고가 아니라 무조건 징계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청주지검에도 방문을 하셨고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김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사장이나 간부들이 위원장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차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제 식구만 감싸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장만 갔습니까, 그 자리에? 손솔, 전용기, 청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갔어요. 그렇

게 해서 이야기를 해도 ‘위원장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거고 윤석열도 그랬고 김건희도 그랬고 거기에 김진모와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앞으로 볼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법무부차관의 답변에 내가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꼭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뻔히 보이는 내용을 감싸니까? 예? 내가 몰랐다면 감싸는데 속아 넘어갈 겁니다. 통신내역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통신내역영장이 제3자 별건이어서 기각하는 게 맞았습니까? 지금 제3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3의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피해자도 있는데 통신내역영장을 수도 없이 청구하는 자들이 법원이 판단하게 하면 될 것을 기각시켰어요. 제3자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기각시켰는데 내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통신영장이 나왔겠어요? 뻔한 내용이 있는데 왜 그걸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요? 내가 당사자인데, 나만 했던 게 아닌데, 나만이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했을 겁니다.

김승원 간사님, 그때 그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승원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동아 위원**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들으셨습니까? 나만 봤기 때문에 모두 다 아니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김승원 간사님도 확인했고 우리가 영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동아 위원님도 확인했고. 그런데 그게 통신영장이 기각할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문제 제기해야지요. 어떻게 뻔히 보이는 내용도 감싸고 무슨 검사가 정의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경찰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뻔히 보이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여기에다가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영장을, 통신영장을 판단한 검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또한 너무 엄격한 증거 기준을 가지고 그 단계에서 통신영장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별건수사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사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설명을 저희가 청취했구요.

○**위원장 서영교** 답변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도 믿을 수가 없군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담당 검사만이 아니라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구속영장은 단 한 장 달랑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입장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통신영장은 제3자가 아니라 별건이라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통신영장 신청서에는 제3의 피해자가 수두룩했습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본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검찰국장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우리가 보지 않은 것도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직접 본 이야기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감싼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는 자기 식구만 감싸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가서 직접 듣고 당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동안도 또 그 검사들한테 당했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다 확인했고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같이 확인했는데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감찰한다고 했는데 감찰하지 않는 것이 뻔한 내용이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지금 그 사건, 본류 사건에 대해서 구속 송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진수 차관님, 실망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실망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경위를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지요. 수도 없이 제가 체크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찰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해야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통신영장 신청서에는 본 사건의 피해자와 그리고 제3의 다른 어린 피해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건이라고 나와서 언론플레이까지 했던 그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뻔히 보았을 텐데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신영장에서 다른 피해자가 수두룩하게 있었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제가 사실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그 통신영장에 다른 피해자가 수두룩하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 관련해서……

○**김동아 위원** 단서가 있었어요, 단서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단서가 있었습니까?

○**김동아 위원** ‘누나, 아는 언니 데리고 와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2 대 1로 하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지금……

○**김동아 위원** 다른 사람에 대한 단서가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맞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단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서영교** 말씀 그만하세요, 이제. 오죽하면 김동아 위원님이 옆에서 나오겠어요, 그 얘기가.

○**김동아 위원** 단서를 통해서 밝히는 거지 다른 피해자가 수두룩 뻔뻔하게…… 그 정도 단서면 다른 피해자가 있겠다라는 충분한 단서가 되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안 봤으면 또 뻔히 본 내 앞에서도 나를 되치기

했을 겁니다. 그게 검사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찾아야지요. 내가 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지 않아도 또 찾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거기에 없어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N번방·박사방 사건을 거치면서 이런 사건은 확대수사 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도 이 사건의 정황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정수사까지 우리가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함정수사 할 수 있게도. 그런데 거기에 단서도 있는데도 그거를 기각시킨 검찰을 왜 감싸고 지금 지적을 해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과정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 설명이 충분히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추가 설명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제 식구 감싸기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건데요. 도이치모터스의 김건희 건을 전부 다 무혐의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었고요. 강백신이, 엄희준이 이재창,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증거를 조작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셨어요. 어느 누구 하나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거고 저만이 아니라 김승원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그리고 행안위 위원님들 다 체크했어요. 박은정 위원님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체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앞에 와서 하십니까?

제가 훨씬 더 질의할 게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처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께도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3분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 저도 한 번만……

○**위원장 서영교** 김승원 위원님.

○**박은정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법제처장님, 지금 법제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올해 4억 7100만 원을 전용받은 게 결산 심사자료 나왔고 그중에 3억 8900이 기관운영비, 법제정 사업비 등 인건비와 무관한 사업으로부터 전용됐거든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것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위반입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이런 법제처 인건비 계상 실패는 매년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법제처장 조원철** 그래 왔습니다.

○**박은정 위원** 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좀 구조적으로 법제처에서 뭔가 이렇게 전용이…… 물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가지이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24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25년도 작년에는 3억 9000, 조금 더 많이 커져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법제처장 조원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워낙에 인건비 책정을……

○**박은정 위원** 적게 되어 있나요?

○**법제처장 조원철** 기획예산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도 있고 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기획예산처에 충분히 그런 점들을 설명하고 좀 여유 있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 AI사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 인건비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법무부차관님, 범피 실적이 지금 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건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치료비, 생계비 등의 지급 실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거든요.

보면 2022년도부터 쭉 계속 심리치료비하고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고 불용액도 지금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치료비, 생계비 등—생계비 지원이겠지요—예산이 44억 1300만 원 중에서 9억 4000이 불용액입니다. 생계비나 치료비 이거는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 때문에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계속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범피 지급 실적은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각 검사들이 범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고요 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치료비, 생계비 이 부분은 불용액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초과하면 초과했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걸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차관님, 홈플러스 건물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꼭…… 9월 4일이 마지막 회생 기간입니다. 그때 결정되기 전에 어쨌건 뭔가 관련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두 번째는 친일재산 환수 관련해서 2기 팀이 올 12월에 결성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1기가 2010년에 활동 종료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6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기에서는 조사 대상 507명 중에 재산조사 204명을 해서 168명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507명에 대한 나머지 재산조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친일행적자 또 친일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관련된 의원님들이 이제 다 무죄가 선고돼서 거의 확정이 됐거나 억울한 누명이 풀리게 됐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혹은 ‘조사받으러 나와라’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것 아직 그냥 묵혀 두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그 사건 관련해서 잔여 사건이 있다는 보고를 별도로 받아본 바는 없었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전에 그때 현장에 몇 명이 있었고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이 누구였고 다 언론보도가 나왔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부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거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누명을 벗은 분들과 함께 입건된 사람들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잔여 사건이 있는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제사건 14만 건 중에서도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수사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승원 위원** 또 마지막으로 범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제 기억에는 수원지검에도 범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경찰의 정보와 함께 정보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문까지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완전히 쳐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노웅래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오늘 선고 예정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못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방금 받았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쌍방 항소 기각으로 노웅래 의원님의 1심 전부 무죄가,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2심도 모두 무죄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건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노웅래 의원 구속시키라며 ‘바스락바스락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때 한동훈 의원께서 법무부장관이셨고 그때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 자들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공소기각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요? 박은정·김용민 의원안에 일찌감치 있었던 내용인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하는 한동훈 발언, 거짓말 아닙니까? 그따위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신중히 보셔야겠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까만 1·2심 무죄가 선고된 사정과 판결 이유 등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셔야겠네요.

제가 기소가 돼서 1심, 2심, 3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다 무죄인데 그사이에 변호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하나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제처장님, 지금 세법 관련해서 입법예고되어 있는 곳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주요 국민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법제처에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1만 5256건이나 되네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재정부하고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 내용 잘 들어서 입법에 반영해 주십시오.

○**법제처장 조원철** 아마 저희가 정책적인 내용을 크게 수정할 수는 없고 재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법제처장 조원철** 예.

○**위원장 서영교** 들어온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서 정리해 보았더니 직장·지방근무, 자녀 교육·육아·가족돌봄, 질병·치료·요양,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인한

비거주의 사유 그리고 중부세 기본공제에 대한 형평성 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비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차별을 두기보다는 실거주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좀 차이를 준다고 한다면 비거주 사람들에게 차별보다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시고 정부에 잘 건의하시고 전달하십시오.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추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서영교·김승원·김기표·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이성운·박형수·곽균택·김민진·주진우·박은정·손솔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의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전에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오동운 처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오늘 저희들 공수처의 수사 실적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말씀 겹쳐히 경청하겠습니다. 좀 더 가일층 수사력을 더 집중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또 제도적·인력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기 공수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가 더욱더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제처장님.

○**법제처장 조원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 업무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법사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전 김승원 김용민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손솔 이성윤 주진우

○출장 위원(1인)

윤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검찰국장 이용철

범죄예방정책국장 송중일

인권국장 승재현

국제법무국장 강준하

교정본부장 이홍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차장 이재승

기획조정관 이형석

수사기획관 박상현

법제처

처장 조원철

차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안상현

법제정책국장 양미향

법령정비국장 윤재웅

행정법제국장 채향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1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 8. 18. 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2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26)

이상 5건 8월 19일 회부됨

○청원 회부

이진관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

(2026. 8. 19. 임한밀 외 51,56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4)

8월 20일 회부됨

임시회의록